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공청회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어디까지 왔나?

피해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 일시 : 2002년 2월 4일(월) 오전10~1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최 : 나라와문화를생각하는의원모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역사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일민족문제학회, 나눔의집,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평화시민연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한국정신대연구소, 우키시마호폭침전상규명회, 우키시마호폭침피해자보상추진위원회, 3.1여성동지회, 원폭피해자와함께하는시민모임, 시베리아사동회,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대성대표자협의회, 독도수호대, 백범경신실천기려연합, 태평양전쟁희생자광주우족회,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우덕역사바로알기시민연대, 과소비추방법국민운동본부, 한국청년연합(결속중), 용의청년연합

인권정보자료실
CPb1.81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

130-866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38-29 금은빌딩 3층 민족문제연구소 內 | 전화 02-969-0226 | 전송 02-965-8879

E-mail : banmin@banmin.or.kr / http://www.banmin.or.kr 담당:우수미(woosumi97@hanmail.net, 019-328-5979)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공청회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어디까지 왔나?

■ 일시 : 2002년 2월 4일(월) 오전10~1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최 : 나라와문화를생각하는의원모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역사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일민족문제학회, 나눔의집,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평화시민연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한국정신대연구소,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 우키시마호폭침피해자보상추진위원회, 3.1여성동지회, 원폭피해자와함께하는시민모임, 시베리아사포회,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독도수호대, 백범정신실천거력연합, 태평양전쟁희생자광주유족회,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우리역사바로알기시민연대, 과소비추방범국민운동본부, 한국청년연합(접촉중), 홍익청년연합

한·미·일 연대 공청회 순서

사 회 : 최 봉 태 (변호사/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 ◎ 제 1 발제 : 한국에서 바라본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필요성과 과제
- 장완익 (진상규명특별법법률안작성변호사)
- ◎ 제 2 발제 : 일본 조사회법 현황과 과제
- 니시가와 시게노리(전쟁피해조사회법을실현하는시민회의대표)
- ◎ 제 3 발제 : 조선인강제련행의 실태와 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의 활동
- 홍상진 (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 조선인측중앙본부 사무국장)
- ◎ 제 4 발제 : 미국의 전후보상소송 현황과 진상규명의 필요성
- 정연진 (재미일본군·징용 정의회복 위원회 위원장)
- ◎ 종합 토론

한·미·일 연대 공청회 자료집 목차

[발제1] 한국에서 바라본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필요성과 과제	-----4
[발제2] 일본 조사회법 현황과 과제(한국어/일본어)	-----7
[발제3] 조선인강제련행의 실태와 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의 활동 / 지금 요구되고 있는 진상규명	-----13
[발제4] 미국의 징용·위안부 소송현황과 진상규명의 필요성 / 미국에서 진상규명을 하는 사람들	-----18
참고자료 1 : 日本 항구평화조사국설치법안 (일본어·한국어) - 국립국회도서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 국립국회도서관법일부개정에 대한 전쟁피해조사회법을실현하는시민회의 태도	-----25
참고자료 2 : 美國 화인스타인 법안(영어, 한국어) - 일본제국정부 정보공개법 - 화인스타인 미 상원의원의 성명	-----29
참고자료 3 : 韓國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 특별법발의 기자회견문	-----34
참고자료 4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 규모	-----41
참고자료 5 : 국내의 진상규명	-----42
참고자료 6 : 일제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 소개 - 경과보고 - 결성취지/구성/활동 - 주간소식지	-----43
참고자료 7 : 기사모음	-----51

한국에서 바라본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필요성과 과제

- 장 완 익

(진상규명특별법 법률안 작성 변호사)

1. 왜 진상규명을 지금 당장 해야되는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자들의 진상규명요청은 간간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작년 한해만 해도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족들이 일본정부로부터 넘겨받은 기록에서 친족의 원혼이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즉각 그만둘 것을 요구하면서, 그동안 일본정부로부터 넘겨받은 명부에 대한 관심도가 여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1971년에 군인·군속 전사자명부로 21,000여명, 1991년에 피징용(노무자)명부로 90,000여명, 1992년에 피징용(노무자)명부로 17,000여명, 1993년에 군인·군속 명부로 240,000여명의 명부를 일본으로부터 공식 전달받았다고 밝혔다.¹⁾

그동안 이러한 명부들은 한국 정부가 1970년대의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 관한 법률과 보상에 관한 법률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서 일본정부에 요청하면서 전달받게 되었으며, 명부의 공개는 유족들의 격렬한 항의를 한국정부가 받아들여 1990년대에 들어서야 서서히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명부의 공개는 넘겨받은 명부를 한국의 정부기록보존소와 외교통상부, 국회도서관 등 관련부처에 이관하여 보관하는 수준에서 머무르면서 그 실질적인 가치는 사실상 서재의 책처럼 남겨져 있었다.

이들 명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 것은 근현대사를 전공한 학자도 아니고, 인명의 출생, 이주, 사망등 인적사항을 관리하는 행정부처도 아니고, 바로 피해자들 자신이었으며, 그들 스스로가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또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기록의 열람을 신청하면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한국의 정부기록보존소에 보관되어 있는 기록을 통해서 가족의 생사나 본인의 피해사실을 기록한 증빙서류를 접하면서 그동안 기록을 방치해 온 한국정부의 처사에 분노와 지탄을 토해내고 있다.

바로 이러한 명부의 조사는 피해자들에게 있어서 가족의 소식을 말해주는 것이며,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또 다른 확인작업인 것이다.

지속적인 피해자들의 기록확인 작업에서, 기록의 오류, 누락, 왜곡에 대한 사실들도 차츰드러나게 되었으며, 이는 생존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더욱 구체화되어 왔다.

일본제철징용자들에 대한 기록과 증언을 대조하는 조사를 하였는데, 이와테현 가마이시 제철소에 근무한 상당수의 징용자들의 기록에서, 근무기간, 미불임금의 금액, 해고의 사유등에서 기록의 오류가 많았으며, 어느 지역에 대해서는 기재된 피해자보다 누락된 피해자가 많은 경우도 있음을 생존자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전선을 따라 이주한 군인·군속의 경우 해방이후 격전지에서 생존해 돌아온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은 조선인들이 현지에서 사망하였는가, 현지에서 있었던 각종의 반인륜범죄의 참상 등을 증언하고 있다.

이들 피해자들의 증언은 바로 강제동원의 정책, 동원자수, 현지에서의 생활양태, 반인륜범죄의 참상, 귀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며, 이는 피해배상청구소송에서 뿐만 아니라, 역

사적, 사회적 가치까지 넘나드는 중요한 자산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들 피해자들은 이미 한계수명을 넘어서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에 이르고 있다. 확률적인 통계로 보아 이들은 이미 70%이상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독일에서 낸 통계치에 의하면 월 1%씩, 1년이면 10%씩 자연 사망하는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피해진상 조사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물리적 시간은 채 5년도 남아있지 않으며, 이 문제의 절박함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한국에서의 진상규명특별법 발의 배경

한국정부는 피해자들의 요구가 분출될 때마다 진상조사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약속해 왔다. 1995년과 1996년도에 해외로 강제동원되었던 희생자의 유골에 대한 실태조사가 있었으나 이후 아무런 진척을 가져 오지 못한 채 중단되고 말았다. 1995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강제동원피해자들의 미불임금의 공탁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진상을 조사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나 단 한차례도 이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93년도에 일본정부로부터 전달받은 24만여명의 군인·군속명부는 전산화를 진행하던 와중에 작업이 중단되었고, 사망자명부에 대해서는 전산화조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피해자들에게 있어 단순한 실망을 넘어, 과연 그들 자신이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인지 회의감이 들 정도로 정부에 대한 불신은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다.

우리는 완전한 과거청산을 위해서는 청산해야할 것들이 과연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명확히 규명하지 않으면 안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지속적인 조사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특별법안으로 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일본에서는 항구평화조사국 설치법안이 상정되어 초당파적으로 입법화를 위해 분투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역시 민주당의 화인스타인 의원을 중심으로 일본제국정부에 의해 자행된 전쟁범죄, 전쟁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위한 정보공개법이 통과되었으며, 100여명 이상의 공무원이 투입되어 이들 정보의 비밀해제, 분류, 색인화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는 소식 역시 한국에서의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움직임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 내에서의 진상조사는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해외에 있는 관련기록의 수집도 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미국이나 일본에서처럼 정부의 특정 부서의 업무를 분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에 관한 별도의 국가기관(대통령 직속하에 진상규명위원회를 둬)을 새롭게 창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또한, 유골수습, 호적정리, 사료관, 위령공간 조성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없는 독창적인 것으로 유족들의 뜻을 반영한 결과다.

3. 한국의 진상규명특별법의 구성

가. 진상규명의 대상

(1) 일제 강점 전기간의 피해 전부를 조사할 수도 있으나, 그 중에서도 전쟁에 동원된 사람의 피해는 그 정도가 극심하므로 이에 대한 조사로 일단 한정하려고 한다. 이는 진상조사의 시간적 물리적 한계도 고려한 것이다.

그래서 법률안 제2조 제1호는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라 함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된 군인, 군속, 노무자, 군 위안부 등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하여 조사 대상을 강제동원 피해로 한정하였다.

(2) "일제하 강제 동원 피해"는 인적 물적 피해를 모두 포함한 개념이며, 이 중에서 인적 피해에 관하여는 "희생자"라는 개념으로 그 피해를 구체화하였다 즉 법률안 제2조 제2호는 "희생자"라 함은 일제하 강제 동원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후유 장애가 남아있는 자라고 정의하였다. 이들 희생자

1)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에서 외교통상부에 제출한 질의에 대한 회신 참조

나 그 유족에 대하여는 치료, 생활 지원, 유골 수습, 호적 정리 등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나. 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

(1) 진상규명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하에 위원장을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 3명은 1급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고 규정하였다(법률안 제4조 제4호).

진상규명위원회는 가장 중요한 업무가 진상규명조사작업이며, 이를 위해서는 상설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상임 위원이 계속되는 진상규명 작업을 지휘하여야 한다.

(2) 사무국

또한 진상규명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할 사무국이 필요하다(법률안 제9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무국내에 조사과를 두고 군인, 군속을 조사할 조사 1과, 노무자를 조사할 조사2과, 군 위안부와 기타 피해를 조사할 조사 3과, 해외의 피해를 조사할 특별조사과로 구분하고 위 상임위원 3명이 조사 1과, 조사2, 3과, 특별 조사과를 나누어 맡아서 그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구체적이 사항은 시행령으로).

사무국장(이사관 또는 별정직 2급 상당)은 위원회의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 감독을 하고, 상임위원은 진상조사 업무에 관한 지휘 감독을 하도록 한다.

(3) 실무위원회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해 시·도지사 소속 하에 진상규명 실무위원회를 둔다(법률안 제12조).

효율적인 진상 규명 작업을 위해서는 피해 사실의 신고를 접수할 전국적 차원에서 일제히 실시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1차적인 조사를 한다. 실무위원회는 현재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제주도에 설치된 사례가 있다.

다. 진상규명위원회의 업무

진상규명위원회는 피해진상조사, 및 진상보고서 작성, 유골 발굴 및 수습, 호적 정리 등의 업무를 한다(법률안 제3조 제2항 각호).

진상조사는 각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를 기초로 하여, 해외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 청구권 협정의 체결 경위, 일본의 자국민과 우리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보상 정책, 한국 정부의 청구권 자금 사용 내역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진상규명위원회는 관련자에 대한 조사와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조사권을 가지며,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받는다.

법률안에 의하면 조사기간은 최장 3년이며, 그 후 6개월 동안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다.

4. 결론

이와 같은 진상규명 작업은 개인이나 시민단체가 하기에는 인적, 물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특히 우리에게 남은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너무 부족하다. 하루 빨리 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부 차원에서 살아 계신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들을 정리하고, 일본 정부나 기업 등에 요청하여 필요한 자료를 구하고, 해외에 산재되어 있는 유골을 발굴·수습하여 일제강점기 중에서도 가장 혹독한 피해를 입은 전쟁 시기의 우리 민족 전체의 피해의 규모와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피해자들이나 그 유족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을 위령함은 물론 앞으로 우리 역사에서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역사의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일본의 조사회법 현황과 과제

- 니시가와 시게노리 西川重則

(전쟁피해조사회법을 실현하는 시민회의 공동대표)

1.

제가 소속하고 있는 「전쟁피해조사회법을 실현하는 시민회의」²⁾가 발족한 것은 1997년 11월 29일입니다. 「공적조사에 의해 역사사실을 명확하게!」³⁾가 우리들의 모토입니다. 발족 이래, 주장하고 있는 공적인 조사회 설치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국회의 예산과 기관을 활용하여 조사를 행한다.
- ② 아시아제국 및 관계 각국의 정부기관의 협력을 얻어 피해실태를 조사한다.
- ③ 일본의 조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관계자료를 제출받아 피해와 가해의 전체상을 조사한다.
- ④ 그 조사결과를 국가의 공적인 것으로 하여 국민의 공유물로 할 것.

공적인 조사회에 대해 이상과 같은 목적을 과제로 하려 했습니다.

발족한 1997년 11월은, 전후 50년 이상이나 경과하여 이미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다수를 차지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가들, 사람들에게 대해 끼친 많은 상처는 지금도 치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대위안부」, 「화학병기·세균병기의 사용」, 「강제연행노동」, 「포로학대·학살」, 「구 식민지출신자 군인·군속의 처우」, 「구 식민지출신 BC급전범의 처우」, 「군표문제」 그 외에 실로 많은 문제가 있으며, 전쟁의 상처는 마음과 신체 양쪽으로 계속해서 고통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여러분들이 일본정부로부터 공식사죄와 개인보상을 요구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위안부 강제 사실은 없다」, 「삼광작전(三光作戰)은 중국인이 하는 말」이라는 발언이나 행동을 보이고 있고, 여론은 양분되어 국제적으로도 일본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진 한편, 실로 해결의 길은 열리지 않은 채 전후 50수년이 경과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전쟁피해조사회법을 실현하는 시민회의」를 발족시켰습니다.

2.

한편 1998년 9월 30일 「항구평화조사국설치법안」(국립국회도서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⁴⁾의 성립을 목표로 초당파적으로 국회의원연맹이 발족하였습니다. 「항구평화를 위해 진상규명법의 성립을 목표로 하는 의원연맹」(약칭 「항구평화의연」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회장은 하마요즈 도시코(浜四津敏子 - 공명당), 하토야마 유키오(鳩山 由紀夫 - 민주당) 2명의 국회의원입니다.

이 법안은 1999년 8월 10일 중의원에 제출되었습니다만 폐안되었습니다. 그 후, 다시 제출하여 현재 계속 심의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립국회도서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며, 2000년 11월 20일에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2) 일본명으로 「戦争被害調査会法を実現する市民会議」이다.
 3) 일본어로 「公的調査によって歴史の事実を明らかに!」이다.
 4) 일본어로 「恒久平和調査局設置法案」(国立国会図書館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
 5) 일본어로 「恒久平和議連」

그 당시 제출자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 由紀夫), 후와 데츠조(不破 哲三), 도이 다카코(土井 たか子), 다나카 고(田中 甲), 키지마 히데오(木島 日出夫), 쓰지모토 키요미(辻元 清美)씨등 6명의 의원, 찬동자는 민주당, 공산당, 사민당의 중의원 의원이며 그 수는 162명입니다. 법안은, 중의원 의원 운영위원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하토야마 쿠니오(鳩山邦夫 - 자민당)와 더불어 2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사는 10명이며, 자민당 6명, 민주당 3명, 공명당 1명입니다. 이사 가운데 「항구평화의연」에 소속하고 있는 하세 히로시(馳 浩 - 자민당), 히가시 준지(東 順治 - 공명당)씨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삼권의 하나로, 입법부의 국립국회도서관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해 이미 보고한 바와 같이 의원운영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도서관운영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당과 참가자 수는 여당의 자민당 5명, 공명당 1명, 야당의 민주당은 2명, 기타 야당에서 1명, 계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 위원장은 민주당의 다카키 요시아키(高木義明)의원입니다.

이상의 구성은 금년의 1월 21일에 시작한 제154회 통상국회에서 임명된 위원회이며, 회기는 6월 19일까지 150일간입니다. 금번 국회에 성립을 목표로 하여 우리들은 결의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3.

법안의 주요한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7개항목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제6장의 2 항구평화조사국(恒久平和調査局)

제16조 2 : 「금차(今次)의 대전 및 이에 앞선 금세기의 일정의 시기에 있어 참화의 실태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그 실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이해를 깊이 하고, 이를 다음 세대에 전함과 아울러, 아시아지역 국민을 비롯한 세계 국민과 우리 국민과의 신뢰관계 양성을 도모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의 유지 및 항구평화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립국회도서관에 항구평화조사국을 설치한다」

이상의 목적하에 이하의 사항에 대해 조사를 합니다.

1. 금차(今次)의 대전에 이르는 과정.. 그 밖의 금차(今次) 대전의 원인 해명 ...
2. 1931년 9월 18일부터 1945년 9월 2일까지(「전전전중기」)의 정부, 구 육해군이 관여한 강제연행, 강제노동 등의 실태..
3. 직접, 간접의 관여에 의해 여성에 대한 조직적, 계속적인 성적인 행위의 강제에 의한 실태..
4. 생물병기, 화학병기의 개발에 의한 사용의 실태..
5. 정부, 구 육해군에 의한 비인도적인 행위에 따른 손해의 실태..
6. 그밖의 전쟁의 결과 발생한 손해의 실태..
7. 일본의 조치, 조약, 국제약속에 관한 사항

국립국회도서관장은, 앞서의 항목 각호의 사항에 대해 조사를 마쳤을 때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의원과 참의원의 의장에게 제출할 것이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사중의 사항에 대해서도 매년 같은 형식의 보고서를 제출해야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또한 법안제출의 이유로써 다음과 같이 명기되어 있고,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안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유를 낭독하고 그 법안의 역사적, 현재적 의의를 확인하고, 더하여 법안을 조기 성립해야할 긴급성을 국내외에 호소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이유 : 금차(今次)의 대전 및 이에 앞선 금세기의 일정의 시기에 있어 참화의 실태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그 실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이해를 깊이 하고, 이를 다음 세대에 전함과 아울러, 아시아지역 국민을 비롯한 세계 국민과 우리 국민과의 신뢰관계 양성을 도모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의 유지 및 항구평화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립국회도서관에 항구평화조사국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 법률안을 제출하는 이유이다.」

여기에 역설되어 있는 「참화의 실태」, 「신뢰관계의 양성」, 「명예로운 지위 유지」, 「항구평화의 실현」, 「국권의 최고기관」 등은, 일본국 헌법의 「전문」, 본문에 각각 높이 세겨진 말로, 뜻과 이념이며, 그 구체화를 위해 불가피한 과제 중의 하나로 「명예로운 지위의 유지」의 전제조건으로, 이 법안이 성립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4.

여기서 우리들의 과제, 법안성립을 향한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보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안 성립이 결코 쉽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전후 57년의 일본의 상황은 맨 처음 말한 바와 같이 전후세대인 오늘날에 있어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역사의 사실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인식의 공유에 앞서 역사의 사실 그 자체의 공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침략·가해 역사사실의 공유랄까, 자위전쟁 혹은 「대동아전쟁」 관 등이 선전되서 국론은 이분되어 있습니다.

국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수파인 자민당·공명당·보수당에 의한 정치, 그리고 직접 법안의 심리에 관여된 의원운영위원회·도서관운영소위원회의 구성원 한사람 한사람이 당에 구속되지 않고 법안의 특질에 관하여, (즉) 전쟁피해의 실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역사인식의 공유를 지양하는 오늘날의 의의를 확실히 인식하고 조기성립을 위해 협력하는 것 이외에는 성립의 전망이 없습니다. 「항구평화의연」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제가 처음부터 강하게 요망하였던 초당파적 사고로,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 전망을 열어나가는 요인의 하나임은 자명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일본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후(戰後)가 끝나지 않았으며, 이미 전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향기 높은 문화의 나라·사회를 창설할 것을 결의한 패전직후의 뜻을 저버린 채, 무력에 의한 나라가 될 것을 선택하고, 헌법개정·교육기본법의 수정·야스쿠니신사 및 호국신사에의 「공식」 참배에 길을 열어나가는 운동·군사주의에 의한 문화형성이 공공연하게 주장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이,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신의 나라」 발언, 또는 야스쿠니신사참배등 수상의 발언 또는 행위와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지지받고 있는 현상을 직시하고, 21세기에 있어 이미 20세기의 식민지배 혹은 전쟁 참화의 역사적 사실의 공적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통감하고 국회의 내외, 일본국 내외의 힘을 결집하여 소기의 목적달성에 전력을 기울여 협력하고자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5.

마지막으로 크리스찬으로 전몰자유족의 한사람으로서 30년 이상 천황제·야스쿠니신사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입장에서, 특히 돌아가신 분의 혼을 위로한다고 하는 「위령(慰靈)」이라 하는 말이 현재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검증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유포되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분별없이 사용되고 있는 형상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추도(追悼)」가 경시되고, 천황의 신사인 A급전범, 구식민지의 전몰자를 합사하고 있는 야스쿠니신사의 종교용어으로써, 또한 식민지지역에서 신사건립에 의해 사용되기에 이르렀다고 생각되고 있는 「위령」이라는 말이 정신사에 있어서나 역사의 사실에 기초해 검증·조사의 필요에 대해 언급하고자 하며, 공청회에서 우리의 진술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2002년 2월 4일

日本における調査会法の現状と課題

－ 西川重則-Nishikawa Shigenori

(戦争被害調査会法を実現する市民会議 共同代表)

(1)

私が所属している「戦争被害調査会法を実現する市民会議」が発足したのは1997年11月29日でした。「公的調査によって歴史の事実を明らかに！」が私たちのモットーです。

発足以来、訴えている公的な調査会の設置に対する提案は、次のようなものでした。

- ① 国会の予算と機関を使って調査を行う。
- ② アジア諸国及び関係各国の政府機関の協力を得つつ被害実態を調査する。
- ③ 日本の調査機関が保有している関係資料を提出させて被害と加害の全体像を調査する。
- ④ その調査結果を国の公的なものとし、国民の共有物とすること。

公的な調査会によって、以上のような目的を果たそうというものでした。

発足した1997年11月、戦後50年以上も経過しており、既に戦争を知らない世代が多数を占める状態となっていました。

しかし、日本がアジア太平洋地域の国々・人々に対して与えた多くの傷跡は今なお、癒されていません。

「軍隊慰安婦」、「化学兵器・細菌兵器の使用」、「強制連行労働」、「捕虜虐待・虐殺」、「旧植民地出身者軍人・軍属の処遇」、「旧植民地出身BC級戦犯の処遇」、「軍票問題」その他、実に多くの諸問題があり、戦争の傷跡は心と身体両面にわたって苦しめ続けています。

被害者の方々が、日本政府からの公式謝罪と個人補償を求め、訴えているのは当然といわねばなりません。

ところが日本では、「慰安婦強制の事実はない」、「三光作戦は中国人の言葉」といった発言や行動が見られ、世論は二分され、国際的にも、日本に対する不信の思いは強くなる一方であり、真の解決の道は閉ざされたまま、戦後50数年が経過し、今日に至っています。

私たちは、そうした状況を直視し、「戦争被害調査会法を実現する市民会議」を発足させたのです。

(2)

さて、1998年9月30日、「恒久平和調査局設置法案」（国立国会図書館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の成立を目指して、超党派による国会議員連盟が発足しました。

「恒久平和のために真相究明法の成立を目指す議員連盟」（略称「恒久平和議連」）と言います。

会長は浜四津敏子-Hamayotsu Toshiko-（公明党）、鳩山由紀夫-Hatoyama Yukio-（民主党）の両国会議員です。

同法案は、1999年8月10日、衆議院に提出されましたが、廃案となりました。その後、再提出、そして現在、継続審議となっています。

同法案は、「国立国会図書館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であり、2000年11月20日に再提出されました。この時の提出者は、鳩山由紀夫-Hatoyama Yukio-、不破哲三-Fuwa Tetsuzoh-、土井たか子-Doi Takako-、田中甲-Tanaka Koh-、木島日出夫-Kijima Hideo-、辻元清美-Tsujimoto Kiyomi-氏ら6議員、賛成者は民主党、共産党、社民党の衆議院議員であり、その数は162人でした。

法案は、衆議院議院運営委員会に付託されています。そして、議院運営委員会の委員長は鳩山邦夫-Hatoyama Kunio-氏（自民党）を始め、25人によって構成されており、理事は10人であり、自民党6人、民主党3人、公明党1人です。理事の中に、「恒久平和議連」に所属している馳浩-Hase Hiroshi-氏（自民党）、東順治-Higashi Junji-氏（公明党）が入っています。

法案は三権のひとつ、立法府の国立国会図書館法の一部を改正するため、既に報告しました議院運営委員会で構成されている「図書館運営小委員会」によって審査されます。

政党及び数は、与党の自民党5人、公明党1人、野党の民主党は2人、他の野党から1人の計9人によって構成されています。小委員長は民主党の高木義明-Takaki Yoshiaki-議員です。

以上の構成は、今年の1月21日に始まった第154回通常国会において任命された委員会であり、会期は6月19日までの150日間です。

今国会の成立を目指し、私たちは決意を新たにしているところです。

(3)

法案の主要な調査項目は次の通りです。7項目について報告します。

第6章の2 恒久平和調査局

第16条の2

「今次の大戦及びこれに先立つ一定の時期における惨禍の実態を明らかにすることにより、その実態について我が国民の理解を深め、これを次代に伝えるとともに、アジア地域の諸国民をはじめとする世界の諸国民と我が国民との信頼関係の醸成を図り、もって我が国の国際社会における名誉ある地位の保持及び恒久平和の実現に資するため、国立国会図書館に、恒久平和調査局を置く」。

以上の目的の下、以下の事項について調査します。

- 1 今次の大戦に至る過程…、その他の今次大戦の原因の解明…
- 2 1931年9月18日から1945年9月2日まで（「戦前戦中期」）の政府、旧陸海軍が関与した強制連行、強制労働などの実態…
- 3 直接、間接の関与による女性に対する組織的、継続的な性的な行為の強制による実態…
- 4 生物兵器、化学兵器の開発による使用の実態…
- 5 政府、旧陸海軍による非人道的な行為による損害の実態…
- 6 その他戦争の結果生じた損害の実態…
- 7 日本の措置、条約、国際約束に関する事項

国立国会図書館長は、前項各号の事項について調査を終えたときは、報告書を作成し、衆議院と参議院の議長に提出することが義務づけられています。なお調査中の事項についても毎年同様の提出をすべき義務を負っています。

なお法案提出の理由として、以下のことが明記され、強調されていることを指摘しておきたいと思えます。事柄の重要性の故に、「理由」を朗読し、この法案の歴史的・今日的意義を確認し、併せて、法案の早期成立の緊急性を国の内外に訴えたいと思えます。

「理由：今次の大戦及びこれに先立つ一定の時期における惨禍の実態を明らかにすることにより、その実態について我が国民の理解を深め、これを次代に伝えるとともに、アジア地域の諸国民をはじめとする世界の諸国民と我が国民との信頼関係の醸成を図り、もって我が国の国際社会における名誉ある地位の保持及び恒久平和の実現に資するため、国権の最高機関たる国会に置かれる国立国会図書館に、恒久平和調査局を置く必要がある。これが、この法律案を提出する理由である」。

ここに力説されている「惨禍の実態」、「信頼関係の醸成」、「名誉ある地位の保持」、「恒久平和の実現」、「国権の最高機関」などは、日本国憲法の「前文」、本文に格調高く謳われている言葉であり、志・理念であり、その具体化の

ための不可避の課題のひとつ、「名誉ある地位の保持」の前提要件こそ、この法案の成立であると確信しています。

(4)

ここで、私たちの課題、法案成立をめざす私たちに直面している状況について報告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法案成立は決して易しいとは思っていません。その要因は次の通りです。

その第一は、戦後57年の日本の状況は、最初に述べたように、戦後世代の時代の今日、戦争を知らない人々が多く、歴史の事実についての認識が十分ではありません。歴史認識の共有の前提である歴史の事実そのものの共有がありません。したがって、侵略・加害の歴史事実の共有どころか、自衛戦争あるいは「大東亜戦争」観などが喧伝され、国論は二分しています。

国会も例外ではありません。多数派である自民党・公明党・保守党による政治、そして直接法案の審議にかかわる議院運営委員会・図書館運営小委員会の構成員のひとりびとりが党の拘束ではなく、法案の特質について、戦争被害の実態を歴史の事実に基づく歴史認識の共有をめざす今日的意義を確認され、早期成立のため協力されること以外に成立の展望はありません。「恒久平和議連」に所属する各党の国会議員が、私が最初から強く望んでいる超党派の思いで、協力を惜しまないことは展望を切り開く要因のひとつであることも自明と言わねばなりません。

ともあれ、いま、なぜ真相究明なのかと言われれば、私はくり返し、金大中大統領の就任直後の発言を心に刻んで欲しいと訴えています。

大統領は「日本はまだ戦前が終わっていない」と断言されました。日本は戦後が終わらないのに、すでに戦前が始まっています。武力によらない、香り高い文化の国・社会を創ることを決意した敗戦直後の志は葬られ、武力による国のあり方を選択し、憲法改正・教育基本法の見直し・靖国神社および護国神社への「公式」参拝に道を開く運動・軍事主義による文化形成が公然と主張されています。

私は、日本において、「天皇を中心とする神の国」発言あるいは靖国神社参拝などが首相の発言あるいは行為であると共に、多くの人々によって支持されている現状を直視しつつ、21世紀にあつて、なお20世紀の植民地支配あるいは戦争の惨禍の歴史的事実の公的調査が必要かつ緊急であることを痛感し、国会の内外、国の内外の力を結集し、所期の目的の達成に全力を傾注すべく、努力したいと心から願っています。

最後に、キリスト者であり、戦没者遺族のひとりとして、30年以上天皇制・靖国神社問題に深くかかわっている立場から、とくに死者の霊を慰めるという「慰霊」という言葉が、現在、歴史の事実に基づく検証がなされずに、社会的に流布され、公私の別なく用いられている現状を指摘したいと思います。普遍的に用いられるべき「追悼」が軽視され、天皇の神社であり、A級戦犯、旧植民地の戦没者を合祀している靖国神社の宗教用語として、更に植民地地域での神社建立によって多用されるに至ったと思われる「慰霊」という言葉が精神史に及ぼした歴史の事実に基づく検証・調査の必要について申し上げ、公聴会における私の陳述を終わります。

2002年2月4日

조선인강제련행의 실태와 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의 활동

- 홍 상 진

(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 조선인측중앙본부 사무국장)

1. 강제련행, 강제로동이란

- 1) 조선인 강제련행 : 육체적 및 정신적인 강제하에서의 이동형태(중군위안부, 남녀의 강제로동, 군인·군속등)
* 당시의 국제법과 일본 국내법에 의한 (1937년의 일본최고재판소 판결)
- 2) 강제로동 : 일본이 1932년에 비준한 국제로동기관(ILO) <강제로동에 관한 조약>에 위반되는 로동실태

2. 자료은폐

- 1) 1945년 8월
 - ① 일본군헌병사령부는 8월 14일, 15일 그리고 8월 20일에 내린 통달문서로 <비밀서류의 소각>을 지시함. (극동국제군사재판속기록 제148호)등
 - ② 1945년 9월 1일 통달 <각 기업은 임금의 태반을 저축하며 장래에 반드시 본인에 넘긴다고 약속하라>고 하면서 당면 <용돈정도>만 주라고 함.6)
 - ③ 1946년 6월 조선인·중국인 강제련행자들의 책임추구투쟁이 심화되니 미점령군의 지시로 일본정부가 명부를 수집함.

朝鮮人移入労働者数について
- 討 議 用 資 料 -

昭和22/7
北東アジア様

1. 強制連行の「強制用労働者」計467千 名について

4 「強制用労働者」の名称について、
「強制用労働者」の名称が妥当でない。
(理由) 國民徴用令の實施は1937年9月以降なので、「強制用」はそれ以後のもの約20万のみを指すことになる。
6) 「強制用労働者」の名称をとりゆめるとしても、それは「企業間の労働動員計画」とづく集団移入労働者であることを見明らかにする。
6) 「強制用労働者」の名称にかえるに、「動員労働者」「日本進出労働者」等を用う。

2. 当時の統計について、
名簿は各事務場が保管しており、移入、移住、死亡、失踪、現在数なども、各職場で整備されていた。それに対して、1年に2度〜3度(3月末、6月末、12月末)現在の統計が、各府県を通じて集計された。20年は3月末がとられ、あとは、特種労働者数が把握された。したがって、政府には当時の集計統計があるだけで、名簿は厚生省には保管されていない。ただし、21年6月に、逓野令第107号の命令で集めた名簿17冊(13万7千400名)は分はる。なか、厚生省とは別に、内務省警備局でも集計されていた。

6) 日本国立公文書館資料、内務省・厚生省より各地方長官(知事)宛「朝鮮人集団移入労働者等緊急措置に関スル件」

지금 요구되고 있는 진상규명⁸⁾

- 홍 상 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정·부정론에서부터 남경대학살의 유무까지, 일본국내에서는 과거의 전쟁책임에 대해서 상대한 주장이 있지만, 논의마다 공통의 기반을 마련할 수 없는 것이 현상이다. 그 원인은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전전(戰前)·전중(戰中)의 막대한 공무선가 비공개, 미정리된 채 문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에이브라함 쿠바씨는 「일본이나 아시아의 다음 세대 사람들이 사태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두가지 모델 케이스를 들고자 한다」고 하며, 전후처리를 성실하게 임한 독일과 유대인, 도르코와 아르메니아의 관계를 들었다.

한편, 아시아에서는 「증오의 감정은 젊은 세대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증오의 감정에 대처할 유일의 방법」이 「역사적 진실의 탐구를 제안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의 전쟁책임을 둘러싼 혼란한 상황을 보면, 이 제안은 매우 현실적인 타개책이라 할 수 있다.

이하, 이제까지의 정부의 대응에서부터 그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진상을 은폐한 정부조사

1993년 8월, 일본정부는 「위안부문제」에 관해, 국내외의 자료와 피해자의 증언을 포함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위안부문제의 강제」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 시기 이미 「조사에 전문 연구자가 참가하지 않았고 실체해명이 형식으로 불충분.. 역으로 공격적인 내셔널리즘을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다」(吉田裕, 一橋대학 조교수. 共同통신 93년 8월 5일)라고 지적되고 있다.

피해자가 「위안부」였다는 것은 공적자료가 아니며, 정부관여의 강제도 명확하지 않다는 부정론이 제기되었다.

원인은, 관료에 의한 임시변통의 조사였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이 시점에서 이미 후생성은 「위안부」 피해자의 명부를 소유하고 있었고(「朝日新聞」 93년 10월 9일부), 법무성은 관련한 막대한 전범자료조사를 수행하였으나 조사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음의 자료 ①은 2년후의 95년 필자가 미국 공문서관에서 입수한 BC급전범군사재판의 판결문이다. 광의 현지주민여성을 일본민간인이 舊일본군위안소에 연행한 사건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했다. 필자는 법무성에 이 자료를 보였고 교섭한 결과 그 사건의 자료 ②를 입수했다.

기소이유에는 「원주민녀를 위안부로서 일본군에 알선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93년의 정부조사에는 자료 ①은 물론이며 62년에 법무성 자신이 작성한 자료②조차 포함되지 않았다.

2) 한일조약
당시 일본의 시이나의무대신은 1965년 한일조약체결과 관련하여 조선인강제연행자요 자료는 <흔적도 없다>(1965.10. 제50회 임시국회)고 일본국회에서 답변함.

3. 1990년대의 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일본정부의 비공개자료

- 1) 명부
 - ① 조선인강제연행자의 명부조사를 실시하여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한국에 명부를 보냄. (일본정부는 명부를 비공개, 개인의 비밀보호)
 - ② 종군위안부 명부도 일본정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나 한국정부에 보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함.
- 2) 미지불금 등
 - ① 조선인강제연행자의 미지불금이 일본국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 짐. 본인에 대한 연락도 없이 시효(時效)가 되었다고 거절하고 있음.
 - ② 조선인강제연행자의 사회보험(연금)이 일본국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 짐. 개인의 비밀보호라고 하여 비공개.
- 3) 전쟁범죄자료
 - ① 일본인이 미국등의 여성들을 종군위안소로 끌고간 것이 전쟁범죄라는 극동국제군사재판속기록도 비공개. (전쟁범죄자개인의 비밀보호라는 구실로)
 - ② 유엔 보고서에서 <진상(해명)은 또한 건전한 사회적 정화(淨化)의 방법으로 되며 과거의 재발을 방지한다>7)

【資料 2】 法務省が所有していたB・C級裁判資料

原告	被告	主文	判決	執行	備考					
氏名	氏名	年月日	年月日	年月日						
1	●●●●明治38年よりグアム島に居留して貿易業を営み同島日本人民留民会長の職にあつたが同人は昭和16年12月10日日本軍が同島に上陸して同島を占領するにあたり同島警備の任に当たっていた米海兵軍司令官兼同島総督「マックミラン」大佐を殴打し且米軍が同19年7月21日同島に上陸して同島を奪還するまでの間同人は日本軍に協力して米國人商社「アンキンコロ」会社の商品を日本軍に押収せしめ亦「E・ナーシャ・パットラー」夫人所有の2馬力半エンジンを強奪して日本海軍に提供しまたは土民を日本軍飛行場建設作業に強新就勞せしめ或いは原住民婦女を慰安婦として日本軍に送致せしめたる外同島大宮金館に於て米國の國旗を引き下ろして掃拭用にして米國の國旗を毀辱した。(本人の供述による)	ク	米	0	19	米				
		7	米	0	.	米				
		ム	米	0	8.					
		0	米	0	27			1	5	年

法務省大臣官房司法法制課「戦争犯罪資料」(1973.3)より ●●●●●は法務省による 筆者

7) 반 보넨.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중대한 침해를 받은 피해자의 원상회복, 배상 등의 권리에 대한 연구. E/CN.4/Sub2/1993/8. 1993년 7월 2일

8) 週刊金曜日 2000.3.31(309호). 원문 일본어

「자료는 있지만 기록은 없다」

이 조사에 대해 「재팬 타임즈」는 「법무성은 재판기록을 은폐하고 있다」(95년 7월 25일)라고 보도했다. 이후 UN인권소위원회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관이 95년의 방일조사시에 법무성에 대해 BC급 재판기록의 공개와 제공을 요구했다.

그러자 법무성은 「자료는 있지만 기록은 없다」⁹⁾고 반론을 제기했다. 그 이유는 자료②는 법무성이 피고로부터 사정을 청취하여 작성한 「자료」이지, 재판의 「기록」은 아니기 때문에 93년의 정부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다.

법무성은 55년부터 15년간에 걸쳐서 제2차대전에 있어 전범재판관계자료조사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세금을 들여서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보고서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는 프라이버시 보호라 하며 공개되지 않고 있다. 자료②는 이때의 조사결과의 일부이다.

이와 같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먼저 자료①도 미국 공문서관에 연락하면 간단하게 입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대만하게 한 법무성은 불충분한 조사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했고 아직도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한번의 조사를 했다면 불충분한 조사에서 잘못된 점을 인정하지 않는 관료의 한계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도 50년대에 조사를 행한 법무성은 다른 성정보다도 그나마 나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공문서의 관리, 공개를 업무로 하는 국립공문서관에는 현재 43만권의 자료가 보관되어 있지만 이 가운데 공개되고 있는 것은 겨우 35%인 15만권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도, 그 공문서중에서 92년 4월 21일, 처음 정부관여의 자료로서 주목된 중국인 「위안부」의 일본국내연행에 관한 각의결정자료가 발견되었던 것이다. (동일 「朝日新聞」 석간)

자치성에는 전전·전중의 경찰·조선총독부·대만총독부등을 관할한 舊내무성의 자료가 방치되어, 그 자료를 쌓으면 2만미터가 된다고 알려져 있다. (「毎日新聞」 94년 11월 6일부)

그 밖에 경찰청, 방위청, 외무성등에도 대량의 미공개자료가 있지만 공개는 되지 않은채 이다.

이와 같은 현상에서 전문가가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수행되는 전면적인 조사가 요망되고 있다.

국회도서관법의 일부개정안

작년 5월,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지만 공개대상에서 「역사적.. 학술적 연구용의 자료로서 특별한 관리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제2조 2)라고 되어 있다. 또한, 아시아 역사자료센터에 의한 자료수집범위도, 이미 공개된 있는 각 성청의 정보제공에 의하지 않고는 도저히 막대한 미정리자료의 전면개시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가운데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작년, 여야당의원(항구평화를 위한 진상규명법의 성립을 목표로 하는 의원연맹)에 의한 「국립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안」(전쟁피해조사회법)이 제안되었다. 이후 소개한다.

먼저, 이제까지의 정부조사와 달리, 조사의 프로라 할 수 있는 국회도서관원이 조사를 행하며, 또한 학식 경험자에게도 「필요한 협력을 의뢰한다」고 하고 있다.

다음으로, 조사대상시기를 31년부터 일본의 패전까지로 조사내용은 정부와 舊육해군의 직접 또는 간접의 관여에 의한 일본인을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징용」, 「성적행위의 강제」, 「생물학병기」의 개발, 「비인도적인 행위」와 전후처리에 대해서도 거의 일본의 전쟁문제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그리고, 이 조사를 위해 국회도서관내에 항구평화국을 설치하고, 관계행정기관에 대해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고, 조사를 행하여, 그 결과를 중참의장에 보고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9) 「재팬 타임즈」(95년 8월 13일)

따라서 이 입법의 취지에 의해 조사가 개시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자료를 은폐하고 있다」고 하는 비난을 피할 수 없으며, 일본에 대한 피해국에서의 불신감은 경감될 것이다. 앞으로, 자료에 대한 의견은 다를지라도 논의할 공통의 기반은 만들어질 것이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와 같이 지난한 작업에 의한 진상규명이 21세기를 향한 과거의 극복에 이를 것이라 할 것이다.

현재, 일본의 전쟁책임문제가 국제적인 문제로 하여 주목되고 있고, UN인권위원회, ILO(국제노동기구)등이 일본정부에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그 개정안이 가진 의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은, 많은 이유에서 절대적으로 방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진상은 또한 건전한 사회적 정화의 방법을 가져올 것이고, 과거의 재발을 방지한다」(UN인권위원회보고서에서 인용)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일본의 전쟁책임에 관한 진상규명은 국제사회에 대한 일본의 공헌을 위해 하지 않으면 안될 절실하고도 중요한 과제이며, 일본자신이 아시아로부터, 세계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도 지금 그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자료①

TABLE IV - VIOLATION OF ARTICLES 7 AND 8 PURPOSE OF PROSTITUTION (two specifications)				
Case	Nature of Offense	Place of Offense	Date of Offense	Type of Offense
1	Did unlawfully take abduction abduction a female person, for the purpose of prostitution, procuring her consent thereto by misrepresentation.	Island of Luzon.	Feb. 1942	ACTUAL
2	Did unlawfully take abduction abduction a female person, against her will and without her consent, for the purpose of prostitution.	Island of Luzon	Feb. 1942	EXTRAJUDICIAL

◀ BC급군사재판기록(미공문서관에서)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이름은 지웠다.(필자)

자료②

事件番号	事件名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법무성의 BC급재판자료. 피고로부터 법무성이 청취작업했다(현재비공개). 피고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이름은 지웠다. 집필자.

미국의 징용·위안부 소송현황과 진상규명의 필요성

- 정 연 진

(정의회복위원회 위원장 - 舊 재미일본군위안부·징용 정의회복위원회)

미국에서의 강제노역 배상소송은 1996년 스위스은행 등을 상대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으로 대거 제기되기 시작한 유대인 피해자들의 홀로코스트 소송에 영향을 받아 1999년 여름부터 제소되기 시작하였고, 1999년 7월 캘리포니아주에서 징용배상특별법(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 354.6조, 발의자의 이름을 따라 일명 헤이든법으로 불림)이 발효되어 소송시효가 2010년까지 연장되면서 재미한인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기업들을 상대로 홀로코스트 소송을 이끈 유대계 인권변호사들이 동참하면서 강력한 원고측 변호인단이 구축되었고 징용소송은 2000년에 위안부 소송으로 확대되었다. 연방법정 및 캘리포니아주 법정 등에 제소된 일본기업 및 정부를 상대로한 소송건이 현재 미국인 전쟁포로들의 징용소송을 포함하여 40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크게 3개로 나누어지는 미국 소송팀 중에서는 현재 징용소송과 위안부 소송을 동시에 전개하고 있는 L.A.소송팀¹⁰⁾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I. 소송현황

1) 정재원 v. 오노다시멘트 징용소송(현 타이헤요 마티리얼)

헤이든법은 '나치 및 동맹국'에 의해 강제노역을 당한 피해자를 수혜대상으로 하는데 일본은 나치독일의 동맹국이었으므로 이 법에 근거하여 징용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헤이든법에 근거한 최초의 한인소송이 오노다시멘트를 상대로한 정재원씨의 징용소송이다. 1999년 10월 4일 L.A. 소송팀에 의해 캘리포니아주 주법정에 집단소송으로 제소된 정재원씨 소송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어려운 고비—피고측 연방법원 이관 명령신청 (헤이든법은 주법이기에 때문에 연방법정으로 이관할 경우 피고에게 유리함), 피고측의 끈질긴 절차상의 연기신청, 피고측 소송기간 요청—등을 모두 무난히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미국의 강제노동 소송에서 절차상의 큰 진전을 보인 모범적 소송으로 자리매김 했다.

특히 작년 9월과 11월, 피터 릭트만(Peter Lichtman) 로스앤젤레스 주법원 판사는 2차에 걸친 피고측의 소송기간 요청을 모두 단호히 거부하면서, 헤이든법이 연방정부의 정치외교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손해배상청구 시효연장은 주법원의 고유권한이라는 입장을 취함과 동시에, 피고측의 불성실한 태도에 벌금까지 부과하는 한편 피고측이 원고측의 재판준비절차에 적극 협조하도록 명령을 내림으로써 원고측에 절차상의 승리를 안겨준 바 있다.

그러나 릭트만 판사의 판결에 대해 올 1월 14일 피고측은 헤이든법의 위헌성을 문제삼으며 항소법원의

10) LA소송팀: 미국에서의 징용소송은 하겐스 버먼을 중심으로 하는 워싱턴(워팀), 로버트 스위프트변호사를 중심으로 하는 필라델피아팀과 LA팀 (배리 피셔 변호사를 중심으로한 6개의 미국로펌과 한태호 변호사를 비롯한 5명의 재미한인변호사들로 구성; 재미한인변호사들에 의해 시작되고 피셔변호사를 비롯한 미국변호사들이 후에 합류)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LA소송팀만이 징용소송과 위안부소송을 병행하고 있다.

의견을 구하는 항소장(writ)을 제출했고, 이에 대해 올 1월 23일 캘리포니아주 제2항소법원의 3인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앞으로 4월 30일에 피고측 항소에 대한 원고측 반론을 심리하기로 결정하고, 이날까지 재판준비 과정을 잠정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본 결정만으로 소송이 불리해졌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으나, 예비심리일에서 헤이든법의 위헌성 여부를 비롯하여 본 소송과 앞으로의 미국에서 일본기업을 상대로한 징용소송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향방이 결정되는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

2) 안성균 외 v. 미쓰이 박홍복 외 v. 미쓰비시 징용소송

2001년 2월 27일 L.A. 소송팀에 의해 캘리포니아 주법원에 집단소송으로 제소된 미쓰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징용소송은 정재원씨 소송과 마찬가지로 피고측의 연방법원으로의 이관 신청을 먼저 다루어야 했다. 피고측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미일강화조약등을 내세워 이 소송이 미국과 일본의 정치외교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연방법원으로 이관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2001년 9월 19일,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의 마샬 판사는 징용피해자들이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민간기업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정치외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원고측 입장을 받아들여 주법원으로의 반송을 결정함으로써 원고측에 승리를 안겨주었다. 따라서 이 소송 또한 캘리포니아 주법인 헤이든법에 의해 심리하게끔 되었다. 작년도 12월 19일에 있었던 Status conference에서 판사는 원고측이 재판준비를 할 수 있도록 증거수집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명령했다. 피고측 변호인단은 정재원씨 소송에도 개입하여 앞으로 헤이든법의 위헌성을 문제삼는 법정조언서를 제출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4월 30일에 있을 정씨 소송의 항소법원 심리가 이 소송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3)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기각된 징용 소송들

1999년 여름부터 캘리포니아 및 워싱턴주의 연방법원 및 주법원에 제소되기 시작한 미군포로 및 한국인, 중국인, 필리핀인의 징용소송은 대부분 주 법정에 제소되었다가 연방법정으로 이관된 소송건들로서¹¹⁾, 로버트 스위프트 변호사를 중심으로한 원고측 변호인단의 신청에 의해 한데 통합되어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장기간 계류 중이었다. 그러나 소송을 담당하게된 워커(Vaughn Walker) 판사는 2000년 9월 21일 미군포로 출신들의 13개 소송을 기각시켜 미국인 징용피해자들을 좌절 시킨데 이어, 2001년 9월 17일에는 한국인 및 중국인 7건, 필리핀인 4건 등 외국인피해자들의 징용소송도 무더기로 기각시키고 말았다.

워커판사의 판결 요지는 미군 포로와 필리핀 출신 소송건에 대해서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 Peace Treaty)에 의해 모든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판결하고, 한국 및 중국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이들 국가가 체결당사국이 아니므로 1951년 조약이 적용되지 않으나, 1) 소송내용이 정치 외교적 문제로서, 행정부의 고유관할 사항이므로 법원의 재판관할권 부재하고, 2) 헤이든법은 연방법에 직접적으로 상반되므로 위헌이며, 3) 그 외 어떠한 청구권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소송 시효가 만료되었으므로 기각한다는 내용으로, 같은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법원이면서도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 주법원과 판이한 판결이었다. 워커판사의 판결문은 일본의 재판에서도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완강히 부인하는 일본기업들의 변론에 활용되고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미국소송이 일본의 전후보상소송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인식한 일본의 변호사, 인권 운동가들이 미국소송팀과의 연대에 대해 진지한 열의를 보이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도 사실이다.

4) 황금주 외 v. Japan (일본정부를 상대로한 일본군위안부 소송)

L.A.소송팀은 워싱턴의 코헨, 밀스틴, 하우스펠트(대표변호사: 마이클 하우스펠트) 로펌과 연대를 구축하고 2000년 9월18일 워싱턴DC 연방법원에 미국법정 최초의 성노예피해자를 위한 소송을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소했다. 이 역사적인 소송은 외국인불법행위 배상청구법에 근거한 것으로, 한국의 황금주 할머니 포함하는 6명과, 대만, 중국, 필리핀 피해자를 포함, 15명의 대표원고로 구성된 4개국 공동소송이었다. 원고

11) L.A.소송팀이 아닌 워싱턴주 및 필라델피아팀에 의한 소송

측 변호인단은 일본측이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기각시키려 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일본이 기각명령을 신청하기 직전에 일본의 면책특권 주장에 대한 사전금지 명령 신청하였고, 일본의 기각명령에 맞서 한국의 국제법학자들의 의견서를 비롯한 반론을 제출하고 작년도 2001년 8월1일 예비심리에서도 탄탄한 반론을 폈으나, 미국 정부의 편파적 개입에 의해¹²⁾ 두 달 후인 10월 4일 케네디 판사는 소송기각 판결을 내리고 말았다.

한 마디로 케네디판사의 판결은 원고측 주장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이라기 보다는 다분히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판사는 일본 정부의 반인륜적인 행위, 성노예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 그리고 배상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일본이 주권 국가로서 미국에서 소송을 당하지 않을 면책특권이 있다는 점과 또한 소송의 내용이 양국의 정부가 정치, 외교적으로 해결해야할 정치적인 문제로서 사법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소송을 기각시킨 것이다. 원고측 변호인단은 즉각 10월 5일자로 항소통고서를 접수하고 항소 중이다. 올 1월 15일에는 한-미-일 인권관련 단체의 법정조언(Amicus Curiae Brief) 제출 의향서를 제출하고 이들 단체들에 의한 법정조언을 준비 중에 있다.

II. 미국내 입법운동의 현황

헤이든법이 한인들의 징용피해 배상소송을 촉발시킨 것과 같이 확실한 법이 통과될 때 미국 소송의 전망은 밝다. 미국의 연방, 하원 중 뜻있는 의원들에 의해 일본의 전쟁범죄를 규명하고 공개 및 배상을 촉구하는 일련의 법들이 상정되었고 일부는 통과되었고 일부는 계류중이다. 몇가지 대표적인 법안을 보면 다이안 파인스타인 연방상원의원이 발의, 2000년 10월에 상원을 통과한 일본제국군 공개법(Japanese Imperial Army Disclosure Act)은 Interagency Working Group이 일본의 전쟁범죄 조사에 착수하는데 한 몫을 했고, 2001년 7월 일리노이주 하원의원 레인 에반스가 발의한 위안부문제 배상을 위한 하원결의안(H. Con. Res. 195)이 연방의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캘리포니아주 의회에 위안부결의안을 발의했던 마이클 혼다 의원이 연방하원이 된 후, 로라베커 하원의원과 공동발의한 미군전쟁포로 정의법(HR 1198: Justice for United States Prisoners of War Act of 2001)은 미군포로들이 일본기업에 상대로 배상을 받을 수 있게끔 허용하지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 발의안은 2001년 말 현재 하원에서 1명의 지지를 더 확보하면 하원통과가 보장된다. 그러나 특히 뉴욕테러사태 이후의 부시행정부하에서 이러한 입법운동은 당분간 위축될 전망이다. 한 예로 연방 상하원이 일치하여 2002년 회계연도 국무부, 법무부, 상무부 예산안에 전쟁포로들의 소송을 방해하는 활동을 위해 국가예산을 쓸 수 없다.라는 요지의 단서조항을 삽입했는데, 이 단서조항이 부시대통령의 비토로 인하여 법제화되는 마지막 단계인 연방의회의Conference Committee에서 삭제되고 말았다.

III. 진상규명의 필요성과 절박성

미국에서의 소송은 일본이나 한국에는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집단소송의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기에 향후 피해자집단으로 법정에서 인정받는 모든 피해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집단소송이 가지는 이러한 대표성 때문에 미국소송은 원고 및 피고 당사자들만의 법정싸움이 아니라, 홀로코스트 소송에서와 같이 궁극적으로는 피해자단체 및 피해국, 가해국의 국가기관과 변호인단의 대표들이 함께 참여, 협상하여 배상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즉 다시말해서 우리에게도 한일관계사를 다시 정립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이기도 하다.

12) 4월 27일 미법무부가 일본의 기각명령신청을 지지하는 입장표명서(Statement of Interest) 제출함; 미국정부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정의 징용소송에서도 일본측을 편파적으로 두둔하는 입장표명서를 제출한바 있다.

또한 그 동안 유엔 인권위와 ILO의 권고사항, 2000년 동경법정 후 최근 헤이그에서의 유죄판결 등에도 꿈적도 않고 있는 일본에 실질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하다. 독일기업과 정부가 법정밖 합의로 소송을 조기타결하기 위해 그토록 애쓴 이유 중의 하나도 미국시장에서 독일기업들에 대한 이미지가 악화되어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의 대다수의 소송이 일본굴지의 대표적 기업을 상대로하고 있는 만큼 일본은 가장 중요한 미국시장에서의 기업이미지 타격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소송이 가지는 이러한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소송팀은 가장 근본적인 장애에 부딪혀 있다. 바로 국내 피해자의 규모와 진상 조차 파악되어 있지 않은 암담한 조국의 현실이다. 과연 집단소송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생존자의 숫자가 많은지, 피해자들의 기업별 분류가 가능한지, 또한 성노예의 제도화에 관여한 기업들은 어떠한 기업들인지, 등등 원고 및 피고기업을 밝혀낼 수 있는 근본적인 사실 규명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팀은 미국에서 소송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미행정부까지 소송에 개입시켜가며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일본기업 및 일본정부를 상대로 하루 하루가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법정싸움에 전력을 다해도 시간이 모자랄 형국에 엄청난 인력과 시간의 싸움을 벌여야 한다.

헤이든법이 소송시효를 2010년까지로 규정하긴 했으나, 징용소송의 대표원고인 재미한인 박흥복씨와 안성균씨가 이미 유명을 달리하신 지금, 한해가 다르게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는 피해자들을 생각할 때 진상규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이 시대 절대절명의 과제이다. 미국에서 소송을 통해 인권과 정의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데도 국내의 진상규명 작업이 지체되어 시기를 놓치고 만다면, 과연 후세의 역사가들이 이 시대를 살아간 한국인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내릴 것인가. 600만-750만으로 추산되는 세계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강제동원의 뼈아픈 한의 역사를 덮어버리고 일본과 어떻게 호혜평등의 선린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한국정부와 국회는 계속 침묵으로 일관할 것인가. 우리 모두 숙연히 생각해 보아야할 과제이다.

미국에서 진상규명을 하는 사람들

- 정 연 진

1. 일본군위안부 및 징용소송 미국변호인단-L.A.소송팀 Profile (01.12.18 현재)

(1) 코헨, 밀스타인, 하우스펠드 & 톨 (Cohen, Milstein, Hausfeld & Toll)

▲본사 : 워싱턴DC

▲전문분야

1) 인권·민권 : 대표적 승소사례

① 홀로코스트 소송(보상금 63억달러)

② '텍사코'(Texaco) 상대 인종차별소송(보상금 1억7,610만달러)

2) 소비자보호, 증권, 환경보호 : 대표적 승소사례

① '필립 모리스' 등 대표적 담배회사 상대 집단소송(보상금 2,060억달러)

② 무기(권총) 제조업체 상대 소송

※ 마이클 하우스펠드 : '일본군 위안부' 소송의 원고측 공동수석변호사 / 이 법률회사의 대표변호사 포상 : 폴란드 대통령명예훈장, 미국 연방에너지부 인간정신상, 사이먼 위젠탈 센터 인권상. 기타 : 미국 법조전문지 'National Law Journal'에 의해 미국 톱 100 변호사 선정.

(2) 플레이쉬먼 & 피셔 (Fleishman & Fisher)

▲본사 : 로스앤젤레스

▲전문분야 : 인권·민권·종교·헌법 : 대표적 승소사례

홀로코스트 소송(보상금 63억달러)

※ 배리 피셔 : '일본군 위안부' 소송의 원고측 공동수석변호사 / 이 회사의 대표변호사, 변호사·음악가·사학자 / 국제인권변호사협회 수석부회장 / 미국변호사협회 종교자유소위원회위원장역임 / 루마니아·보스니아·몰도바·알바니아 헌법 초안 참여 / 영국·독일·러시아·스페인·캐나다 정부 법률자문

(3) 리프, 카브레이저, 하이만 & 번스타인 (Lief, Cabraser, Heimann & Bernstein)

▲본사 : 샌프란시스코

▲전문분야

1) 인권·민권 : 대표적 승소 사례

홀로코스트 소송 (보상금 63억달러)

2) 기업 불법행위, 증권·투자·소비자 사기, 불법고용, 환경오염, 불량제품 : 대표적 승소사례

① '필립 모리스' 등 대표적 담배회사 상대 집단소송(보상금 2,060억달러)

② '스테이트팜 보험회사' 상대 소송(보상금 10억달러)

▲ 1998년 미국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가 수여하는 '민권항법사상' 수상.

(4) 더 카크런 펌 (The Cochran Firm)

▲본부 : 뉴욕

▲전문분야

1) 형사·행정 : 대표적 승소사례

① O. J. 심슨(프로 미식축구 선수) 살인혐의 사건 무죄방면

② 경찰 월권 및 직무 유기에 대한 각급 정부 소송 (보상금 1억2,000만달러)

2) 민사(인종차별, 기업 불법행위, 증권·투자·소비자 사기, 불법고용, 불량제품) : 대표적 승소사례

① 담배회사 상대 소송 (뉴욕·앨러배머 주정부 대리, 보상금 272억달러)

② '윌트 디즈니'사 상대 계약법 위반 소송 (보상금 2억4,000만달러)

※ 자니 카크런 : 미국 최고의 형사변호사 톱 100에 선정 / 정부 상대 소송에서도 명성

(5) 임, 루거 & 김 (Lim, Ruger & Kim)

▲본사 : 로스앤젤레스

▲전문분야 : 국제계약, 소비자보호, 금융, 증권 부문 : 대표적 승소사례)

① 'Farwest Savings & Loan' 상대

② 미국 군수산업체 'Allied Signal' 대리한 소송

→ ①은 1990년대 초반 미국 금융계를 뒤흔들었던 'Savings & Loan' 사기 사건에서 미국 연방예금보협공사(FDIC)를 대리했던 소송으로 미연방수사국(FBI)와 함께 한 것.

▲비고 : 1989년 미국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전국 최고 소수계 법률회사 49개'에 뽑힘.

'나이키' 등 세계 우수기업의 고문 법률회사.

※ 크리스토퍼 김 : 이 법률회사의 대표 변호사 / 캘리포니아주 법관 평가위원 / 재미교포 3세 (독립운동가 홍인명 여사의 외손자)

(6) 블루멘델 & 마컴 (Blumenthal & Markham)

▲본사 : 라 호야 (캘리포니아주)

▲전문분야 : 소비자보호, 금융, 증권, 환경보호 부문 : 대표적 승소사례)

① 캘리포니아 주정부(차량국) 상대 불법행정 소송(보상금 6억6,500만달러)

② 각종 대형은행 상대 소비자보호 소송

(7) 이외 재미교포 변호사 한태호·김기준·양지혜·김태희, 한국변호사 장완익·최봉태 변호사가 함께 하고 있다.

2. 당대의 인권변호사 Barry Fisher 어떻게 얻었나

이번 소송에서 원고측 변호인단의 수석변호사는 배리 피셔 변호사와 마이클 하우스펠드 변호사이다. 2차대전 당시 나치의 박해를 받았던 유대인 피해자들이 독일 정부와 나치 관련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승리로 이끌었던 당대의 인권변호사들로 두 사람은 친구다.

처음 재미교포들만으로 출범한 LA소송팀은 승소를 위해 미국 주류사회의 정치력과 세계 정상의 법적 전문성을 겸비한 미국변호사들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 적임자를 찾기 시작했다. LA에 있는 변호사로서는 단연 피셔 변호사가 최고였다. 그러나 거듭된 청원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석변호사를 맡아달라는 제의를 선뜻 수락하지 않았다. 그를 얻지 못하면 할 수 없이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담판을 하기로 했다. 1999년 11월말이다. LA소송팀은 LA의 유명한 식당가인 라시에네가에 있는 고급 한식점 우래옥으로 피셔 변호사를 초대했다. 약속시간은 저녁 7시였다. 소송팀은 일부러 구입한 CD 3장을 가지고 식당에 미리 도착해 각 CD에 있는 음악을 한 곡씩 지정해 신호를 보내면 틀어달라고 식당측에 부탁했다. 잠시후 나타난 피셔 변호사를 맞아 의례적 인사를 나눈 LA소송팀의 신호에 따라 음악이 흘러나왔다. 요청한 순서대로 틀어진 세 곡은 우리 가곡 '새야 새야 파랑새야'·'봉선화'·'그리운 금강산'이었다. 음악이 끝나고 설명이 곁들여졌다. '새야 새야'를 둘러싼 동학혁명과 청일전쟁과 1890년대의 조선사, 성악가 김천애 전 숙대교수가 일제때 '봉선화'를 부르고 박해받은 이야기와 일제강점기 역사, '그리운 금강산'이 담고 있는 분단의 아픔과 현대 한국사에 대한 설명이었다. 역사와 정의를 위해 소송을 맡아 달라는 간곡한 청이 다시 있었다. 며칠후 피셔 변호사는 자신이 한국인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이 되겠다고 알려왔다. 음악과 역사를 택한 이유는 그가 변호사면서 음악가이자 사학자였기 때문이다.

미국변호사협회 종교자유소위원장을 지냈고(1987~94) 중·동부유럽 법률기구 고문으로 루마니아·보스니아·몰도바·알바니아의 헌법 초안에도 참여했으며 영국·독일·러시아·스페인·캐나다 정부를 위해 법률자문도 한다. UCLA법과대학원 출신으로 인권·종교·헌법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LA의 로펌 '플레이쉬먼 & 피셔'의 공동대표 변호사이다. LA소송팀 변호사들이 승소시 수입료를 책정할 때 배상금에는 손대지 않고 실제로 자신들이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적당한 수입료를 계산해 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 피고측에 별도로 청구한다는 것도 그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패소해도 피해자는 수입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의 합류는 나중에 마이클 하우스펠드나 자니 카크런 같은 미국 최고 변호사들의 합류로 이어졌다. 현재 LA소송팀은 정상의 미국 로펌 6개와 손잡고 이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3. '임, 루거 & 김'(Lim, Ruger and Kim, LLP) 어떤 Law Firm인가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본군 '위안부' 및 징용 소송의 원고측 변호인단에 2001년 합류한 '임, 루거 & 김'은

독립운동가 홍인명 여사의 외손자 크리스토퍼 김 변호사가 LA에 세웠으며 오늘날 미국 최대의 아시안 아메리칸 로펌으로 발전한 법률회사다. '임, 루저 & 김'은 프루덴셜 보험회사나 나이키 같은 세계적 다국적 기업, 미국의 대표적 비영리재단인 와인가트 재단, LA카운티정부, 현대 그룹, 한미은행 등이 고객으로 국제상법과 계약법이 전문인 'AV'급 로펌이다. AV급이란 미국 법조계가 최고의 법률회사에 부여하는 등급이다. '임, 루저 & 김'은 이미 1989년 미국변호사협회에 의해 전국적으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소수계 로펌 49개'에 선정됐다.

김 변호사의 이번 소송 합류로 그의 집안은 '외할머니 홍인명 여사(독립운동가), 외종조 리처드 홍(미육군) → 아버지 패트릭 김(미육군), 외삼촌 조지 임(미공군) → 김 변호사'로 이어지면서 3대가 80년에 걸쳐 일본과 싸우는 셈이다. 홍 여사는 보통학교 교사로 있다가 3·1독립운동에 참가한 후 모교인 진명여고에서 만세운동을 기도하다가 일경에 쫓겨 상해로 망명한 후 거기서도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체포돼 3개월간 옥고를 치른 뒤 귀국, 1921년 도미했다. 초기 이민자로서 극심한 인종차별과 가난속에서 7남매를 어렵게 키우면서도 독립운동단체였던 동지회의 골수 회원이었고 교포 행사가 있으면 독립선언서 낭독과 만세삼창을 도맡아 '만세 할머니'라는 별명을 얻었다. 2차대전 당시 김 변호사의 부친인 패트릭 김씨는 미 육군으로 참전, 필리핀 등 태평양전선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싸웠다. 김 변호사의 외종조(외할머니의 남동생) 리처드 홍씨는 미육군 중령으로 일본과 싸웠는데 그는 그때까지 미군 역사상 가장 계급이 높은 아시안 아메리칸 장교였다. 김 변호사의 큰 외삼촌 조지 임씨는 공군폭격기 조종사(중위)였다. 김 변호사의 작은 외삼촌 지미 임씨는 미육군 하사관으로 한국전쟁에 참전, 함경도까지 복전에 참가했다.

매일 아침 할머니에 대한 문안전화로 하루를 시작하는 김 변호사는 UC버클리, UCLA 법과대학원을 졸업한 23년 경력의 민사사건 전문 베테랑 변호사로 캘리포니아주 법관심사위원으로 있으며 캘리포니아주 재판자문위원(1991-95년)을 역임했다. 1990년대초 전국을 흔들었던 '세이빙스 & 론' 사기 사건에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대리해 미연방수사국(FBI)와 함께 진행했던 'FSL'(Farwest Savings & Loan) 상대 소송, 스마트탄을 제조하는 미국 군수산업체로 Fortune 500 회사인 '엘라이드 시그널'(Allied Signal)을 대리한 소송 등이 대표적 승소사례다.

4. UCR(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연구 프로젝트

'한국현대사와 21세기 한국의 세계화' 프로젝트는 한국의 기부자로부터 주어진 20만달러를 종자돈으로 삼아 1999년12월 출범했으며 UCR 인종학과 장태한 교수가 코ордин레이터를 맡고 있다. 일본을 의식해, 명분은 해외 한민족이 어떻게 조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도울 수 있는가, 나아가 통일한국의 미래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으로 돼있으나 실질적 단기 목표는 일본군 '위안부'와 징용 문제에 대한 연구다. 해외동포의 조국에 대한 기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동포의 근원을 밝히는 것으로부터 연구가 시작돼야 하는데 오늘날 동포란 20세기초 한민족 대이동이 근원이기 때문에 그 직접적 원인인 일제의 조선 강점 문제와 이에 따른 독립운동·징용·'위안부' 문제 등을 연구한다는 논리다.

이 연구는 20세기를 점철하며 한반도에서 벌어진 각종 전쟁범죄나 반인도범죄에 대한 연구라는 독특하면서도 커다란 그림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대학은 여러 이유로 이 같은 연구를 못했지만 20세기 한국사가 일관성 있게 보여주는 비극의 하나는 한민족이 끊임없이 전쟁범죄나 반인도범죄의 제물이 됐다는 사실이다. 징용이나 '위안부' 문제,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이나 한국군경에 의한 양민학살 문제, 미군에 의한 노근리 사건이 모두 그렇다. 비교적 최근 사건인 광주민주화항쟁 역시 마찬가지로 맥락이다. 이 모든 사태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피해자 규모 확인을 비롯해 진상규명 자체가 명쾌하지 못한 채 모든 사건이 역사에 묻혀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공통점은 가해자가 일본정부와 일본군, 북한정부와 북한군, 한국정부와 한국군, 미국정부와 미국군, 다시 광주민주화항쟁의 경우는 가해자가 한국정부와 한국군으로 바뀌면서, 피해자는 모두 한국의 민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시간의 흐름과 함께 가해자만이 달라질 뿐 피해자는 모두 같다는 얘기다.

이 프로젝트는 이 같은 비극의 역사를 학문적 독립성을 가지고 객관적인 견지에서 장기적으로 연구함으로써 희망적 미래를 준비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수많은 한국의 대학이나 외국의 한국학 연구소들이 아직 한반도 시도하지 않은 시각에서 황무지 개척에 나선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원래 미국의 다른 명문사립대에서 진행될 계획이었으나 일본측 반대 로비로 무산됐다가 이 같은 사실을 알게된 장태한 교수 등 몇몇 인사들의 용기와 결단에 힘입어 가까스로 시작될 수 있었다.

국립국회도서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2000년 11월 20일 중의원 제출(衆法第18號)

제출자 :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후와 데츠조(不破哲三)

도이 타카코(土井たか子)

타나카 코우(田中 甲)

기지마 히데오(木島日出夫)

츠지모토 키요미(辻元清美)

찬성자 162명

국립국회도서관법(1948년 법률제5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国立国会図書館法(昭和二十三年法律第五号)の一部を次のように改正する。

제6장 다음에 이하의 1장을 추가한다. 第六章の次に次の一章を加える。

제6장의 2 항구평화조사국 第六章の二 恒久平和調査局

제16장의 2 이번 대전 및 이에 앞선 금세기의 일정시기에 있어서의 참화의 실태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그 실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이해를 깊이하고 이를 후세대에 전함과 아울러 아시아지역 국민을 비롯한 세계 국민과 우리 국민과의 신뢰관계 양성을 도모하여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명예로운 지위의 유지 및 항구평화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립국회도서관에 항구평화조사국을 설치한다.

第十六条の二 今次の大戦及びこれに先立つ一定の時期における惨禍の実態を明らかにすることにより、その実態について我が国民の理解を深め、これを次代に伝えるとともに、アジア地域の諸国民をはじめとする世界の諸国民と我が国民との信頼関係の醸成を図り、もつて我が国の国際社会における名誉ある地位の保持及び恒久平和の実現に資するため、国立国会図書館に、恒久平和調査局を置く。

항구평화조사국은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 조사한다. 恒久平和調査局は、次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調査する。

1. 이번 대전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의 우리나라 사회경제적 정세의 변화, 국제정세의 변화 및 정부와 육해군에 있어서의 검토상황 기타 이번 대전의 원인을 해명하는데 기여하는 사항

一 今次の大戦に至る過程における我が国の社会経済情勢の変化、国際情勢の変化並びに政府及び旧陸海軍における検討の状況その他の今次の大戦の原因の解明に資する事項

2. 소화 6년(1931년) 9월 18일부터 소화 20년(1945년) 9월 2일까지의 기간(이하 "전전전중기"라고 함)에 있어서 정부 또는 육해군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관여에 의하여 노동자 확보를 위해 구 호적법(1914년 법률 제26호)의 규정에 의한 본적을 가지고 있었던 자 이외의 자에 대해 행해진 징용 기타 이와 비슷한 행위 및 이러한 행위들의 대상이 된 자의 취로 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

二 昭和六年九月十八日から昭和二十年九月二日までの期間(以下「戦前戦中期」といふ。)において政府又は旧陸海軍の直接又は間接の関与により労働者の確保のために旧戸籍法(大正三年法律第二十六号)の規定による本籍を有していた者以外の者に対して行われた徴用その他これに類する行為及びこれらの行為の対象となつた者の就労等の実態に関

する事項

3. 전전전증기에 있어서의 舊육해군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관여에 의한 여성에 대한 조직적이며 계속적인 성적행위의 강제(이하 "성적강제"라고 함)에 의한 피해의 실정과 기타 성적 강제의 실태에 관한 사항
三 戦前戦中期における旧陸海軍の直接又は間接の関与による女性に対する組織的かつ継続的な性的な行為の強制(以下「性的強制」という。)による被害の実情その他の性的強制の実態に関する事項

4. 전전전증기에 있어서의 舊육해군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관여에 의해 행해진 생물병기 및 화학병기의 개발, 실험, 생산, 저장, 배비, 유기, 폐기 및 사용의 실태에 관한 사항

四 戦前戦中期における旧陸海軍の直接又は間接の関与により行われた生物兵器及び化学兵器の開発, 実験, 生産, 貯蔵, 配備, 遺棄, 廃棄及び使用の実態に関する事項

5. 전 3호에 언급한 것 외에 전전전증기에 있어서의 舊육해군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관여에 의한 비인도적 행위에 의해 舊호적법(1914년 법률제26호)의 규정에 의한 본적을 가지고 있었던 자 이외의 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의 실태에 관한 사항

五 前三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 戦前戦中期において政府又は旧陸海軍の直接又は間接の関与による非人道的な行為により旧戸籍法の規定による本籍を有していた者以外の者の生命, 身体又は財産に生じた損害の実態に関する事項

6. 제2호부터 전호까지 언급한 것 외에 전전전증기에 있어서의 전쟁의 결과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한 실태에 관한 사항

六 第二号から前号までに掲げるもののほか, 戦前戦中期における戦争の結果生命, 身体又は財産に生じた損害の実態に関する事項

7. 전전전증기에 있어서의 전쟁의 결과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 당해손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취한 조치 및 당해 손해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과 기타 국제약속에 관한 사항

七 戦前戦中期における戦争の結果生命, 身体又は財産に生じた損害について当該損害が生じた者に対し我が国がとつた措置及び当該損害に関し我が国が締結した条約その他の国際約束に関する事項

관장은 전항 각호에 언급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양의원의 의장에 대해서 그것을 제출해야 한다.

館長は, 前項各号に掲げる事項につき調査を終えたときは, その結果を記載した報告書を作成し, 両議院の議長に対し, これ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관장은 제2항 각호에 언급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끝낼 때까지 매년 조사중의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양의원의 의장에 대해서 그것을 제출해야 한다.

館長は, 第二項各号に掲げる事項につき調査を終えるまで, 毎年, 調査中の事項についての報告書を作成し, 両議院の議長に対し, これ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2항의 조사 및 전2항의 보고를 함에 있어서는 관계자의 명예를 해치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 第二項の調査及び前二項の報告書の作成を行うに当たっては, 関係人の名誉を害することのないよう十分に配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16조 3 관장은 전조 제2항의 조사를 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지방공공단체의 장에 대해서 자료의 제출을 비롯한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第十六条の 三 館長は, 前条第二項の調査を行う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 関係行政機関の長及び関係地方公共団体の長に対して, 資料の提出その他の必要な協力を要求することができる。

관장은 전조 제2항의 조사를 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항 각호에 언급한 사항에 대해서 학식 또는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전항에 규정한 자 이외의 자(국외에 있는 관계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필요한 협력을 의뢰할 수 있다.

館長は, 前条第二項の調査を行うため特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 同項各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学識又は経験のある者その他の前項に規定する者以外の者(国外にいる関係者を含む。)に対しても, 必要な協力を依頼することができる。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지방공공단체의 장이 제1항의 요구에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에는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그 이유를 관장이 수락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지방공공단체의 장은 당해 자료의 제출을 할 필요가 없다.

関係行政機関の長又は関係地方公共団体の長が第一項の要求に係る資料の提出を拒むときは, その理由を疎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理由を館長が受諾し得る場合には, 関係行政機関の長又は関係地方公共団体の長は, 当該資料の提出をする必要がない。

전항의 이유를 수락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장은 양의원의 의장에 대해서 제1항의 요구에 관련한 자료의 제출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취지의 내각성명을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前項の理由を受諾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は, 館長は, 両議院の議長に対して, 第一項の要求に係る資料の提出が国家の重大な利益に悪影響を及ぼす旨の内閣の声明を要求するよう求めることができる。

전항의 요청을 받은 양의원의 의장이 동항의 성명을 요구하고 그에 대하여 동항의 성명이 나왔을 경우에는 제1항의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지방공공단체의 장은 당해 자료의 제출을 할 필요가 없다.

前項の求めを受けた両議院の議長が同項の声明を要求し, これに対して同項の声明があつた場合は, 第一項の資料の提出の要求を受けた関係行政機関の長又は関係地方公共団体の長は, 当該資料の提出をする必要がない。

전항의 요구가 있는 후 10일이내에 내각이 제4항의 성명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지방공공단체의 장은 당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前項の要求後十日以内に, 内閣が第四項の声明を出さないときは, 第一項の資料の提出の要求を受けた関係行政機関の長又は関係地方公共団体の長は, 当該資料の提出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부칙 附則

1. 이 법률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この法律は, 平成十三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

2. 당분간 국립국회도서관의 직원(관장, 부관장, 휴직자<이에 준한 자로서 관장이 정한 자를 포함> 및 비상근직원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890명으로 한다.

2 当分の間, 国立国会図書館の職員(館長, 副館長, 休職者(これに準ずる者として館長が定める者を含む。))及び非常勤職員を除く。)の定員は, 八百九十五人とする。

이유 理由

이번 대전 및 이에 앞선 금세기의 일정시기에 있어서의 참화의 실태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그 실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이해를 깊이하고 이를 후세대에 전함과 아울러 아시아지역의 국민을 비롯한 세계 국민과 우리 국민과의 신뢰관계 양성을 도모하여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명예로운 지위의 유지 및 항구평화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권의 최고기관인 국회에 두어지는 국립국회도서관에 항구평화조사국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 법률안을 제출하는 이유이다.

今次の大戦及びこれに先立つ一定の時期における惨禍の実態を明らかにすることにより, その実態について我が国民の理解を深め, これを次代に伝えるとともに, アジア地域の諸国民をはじめとする世界の諸国民と我が国民との信頼関係の醸成を図り, もって我が国の国際社会における名誉ある地位の保持及び恒久平和の実現に資するため, 国権の最高機関たる国会に置かれる国立国会図書館に, 恒久平和調査局を置く必要がある。これが, この法律案を提出する理由である。

본안 시행에 필요한 경비 本案施行に要する経費

본안 시행에 필요한 경비로서는 평년도 약 2억 5천만엔으로 보고 있다.

本案施行に要する経費としては, 平年度約二億五千万円の見込みである。

「국립국회도서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에 대한
전쟁피해조사회법을 실현하는 시민회의의 태도
「国立国会図書館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に対する
戦争被害調査会法を実現する市民会議の態度

「항구평화를 위해서 진상규명법의 성립을 목표로 하는 의원연맹」은, 1998년 9월에 발족하여 6개월간의 의논을 거쳐, 1999년 6월 11일 총회를 개최해, 「국립국회도서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결정하여, 현재 각 당의 정책조사회 수준에서의 검토가 결여되어 있다. 우리 전쟁피해조사회법을 실현하는 시민회의는, 이러한 「항구평화연맹(恒久平和議聯)」에서의 논의 자체가, 전쟁 후 53년이 경과하고서야 간신히 걷기 시작한 진상규명의 움직임인 것을 환영한다.

동 총회에서 결정된 「국립국회도서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은, 국회 대책적(對策的)·정책적 배려로, 「우리나라의 관여에 의한」이라고 하는 문언을 삭제하는 대신에 「전전전중기에 있어서의 전쟁의 결과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생긴 손해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더하여 일본인 전쟁 희생자를 시사하는 항목을 조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우리는, 일본인의 전쟁 피해에 대해서 조사하는데 인식한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 일본이 외국인에게 준 피해의 실태조사가 가버히 취급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향후의 국회에서의 심의의 과정에서, 동 법안으로부터 일본이 준 피해를 조사하는 항목이 삭제되거나 후퇴하거나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한다. 게다가 동 법안이 성립한 후에도, 동 법안에 의해 국립국회도서관내에 설치되는 항구평화조사국이, 당초의 목적에 따른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주시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1997년 11월의 발족 이후,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와 아시아 태평양전쟁에 있어서 일본이 준 피해의 실태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공표해, 후세에게 전하기 위해, 공적조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그 실현을 위해서 다루어 왔다. 이번 「국립국회도서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우리의 목적을 완전히 채울 수 있을지 어떨지는 불분명하지만, 현재의 국회 상황을 고려하여, 또 동 법안이 전후 처리 문제에 관련된 전후처음의 초당외 의원연맹인 「항구평화를 위한 진상규명법의 성립을 목표로 하는 의원연맹」 총회에서의 공식결정이 라고 하는 점도 중시하고, 간신히 행보를 시작하였다는 점을 지지하며, 동 법안 성립을 위해서 역량을 동원해 나갈 것이다.

「恒久平和のために真相究明法の成立を目指す議員聯盟」は、昨年9月の発足より6ヶ月間の議論を経て、去る6月11日総会を開催し、「国立国会図書館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を決定し、現在各党の政策調査会レベルでの検討にかけている。私たち戦争被害調査会法を実現する市民会議は、こうした「恒久平和議聯」での論議自体が、戦後53年が経過してようやく歩み始めた真相究明の動きであることを歓迎する。

同総会で決定された「国立国会図書館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は、国会対策的・政策的配慮から、「我が国の関与による」という文言を削除し、代りに「戦前戦中期における戦争の結果生命、身体又は財産に生じた損害の実態に関する事項」を加えることにより日本人戦争犠牲者を示唆する項目を調査対象に追加した。私たちは、日本人の戦争被害について調査することに吝かではないが、それゆえに日本が外国人に与えた被害の実態調査が軽んぜられてはならないと考える。なによりも、今後の国会での審議の過程で、同法案から日本の与えた被害を調査する項目が削除されたり、後退したりすることがあってはならないと強く主張する。さらに、同法案が成立した後も、同法案により国立国会図書館内に設置される恒久平和調査局が、当初の目的にそった厳正な調査を実施するよう注視していく必要があると考える。

私たちは、1997年11月の発足以降、日本による植民地支配とアジア太平洋戦争において日本が与えた被害の実態について調査し、その調査結果を公表し、後世に伝えていくために、公的調査会の設置が必要だと主張し、その実現のために取り組みを進めてきた。今回の「国立国会図書館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が、私たちの目的を完全に満たすものであるかどうかは不明な点も残るが、現下の国会状況を考慮し、また同法案が戦後処理問題に 関聯した戦後初の超党派議員聯盟である「恒久平和のために真相究明法の成立を目指す議員聯盟」総会での公式決定であるという点も重視し、ようやく歩みを始めたこの動きを支持し、同法案成立のために力を注ぐものである。

1999年6月21日

전쟁피해조사회법을 실현하는 시민회의 운영위원회 戦争被害調査会法を実現する市民會議 運営委員会

TITLE VIII -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JAPANESE
IMPERIAL GOVERNMENT (일본제국정부의 정보 공개)

H.R.5630

One Hundred Sixth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제160차 미합중국 의회)
AT THE SECOND SESSION(제2회 회기)
Begun and held at the City of Washington on Monday, (워싱턴시개회, 월요일)
the twenty-fourth day of January, 2000(2000년 1월 24일)

SEC. 801. SHORT TITLE : 약칭

This title may be cited as the 'Japanese Imperial Government Disclosure Act of 2000'.
본 법의 명칭은 「일본제국정부정보공개법」이라 한다

SEC. 802. DESIGNATION : 명칭

(a) DEFINITIONS - In this section : 정의 - 본 section에 있어서

(1) AGENCY- The term 'agency' has the meaning given such term under section 551 of title 5, United States Code. : 부처(部處, AGENCY) - 「부처(AGENCY)」라는 용어는 합중국규칙 타이틀 5, 섹션 551에서 이 용어에 정의되어 있는 의미를 말한다.

(2) INTERAGENCY GROUP- The term 'Interagency Group' means the Nazi War Crimes and Japanese Imperial Government Records Interagency Working Group established under subsection(b). : 관계부처조사단(INTERAGENCY GROUP) - 「관계부처조사단(Interagency Group)」라는 말은 본 섹션(b)에 의해 설립된 나치전범 및 일본제국정부기록 관계부처합동조사단(Nazi War Crimes and Japanese Imperial Army Records Interagency Working Group)을 가리킨다.

(3) JAPANESE IMPERIAL GOVERNMENT RECORDS- The term 'Japanese Imperial Government records' means classified records or portions of records that pertain to any person with respect to whom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in its sole discretion, has grounds to believe ordered, incited, assisted, or otherwise participated in the experimentation on, and persecution of, any person because of race, religion, national origin, or political opinion, during the period beginning September 18, 1931, and ending on December 31, 1948, under the direction of, or in association with- : 일본제국정부기록(JAPANESE IMPERIAL ARMY RECORDS) - 「일본제국정부기록(Japanese Imperial Army records)」이라는 말은 그 인물에 관하여 1931년 9월 18일부터 194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다음의 어떠한 명령에 의해 또는 이와 공동으로 인종, 종교, 민족적 출신, 혹은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어떤 인물의 생체실험등으로 박해를 명령, 교사(敎唆), 원조하고, 그의 협력했다는 근거를 갖고있다고 합중국정부가 스스로 인정하는 일체의 인물에 관련된 기밀취급의 기록 또는 기록의 일부를 가리킨다.

- A : the Japanese Imperial Government; (일본제국정부)

- B : any government in any area occupied by the military forces of the Japanese Imperial Government; (일본제국정부의 군대에 의해 점령된 모든 지역의 모든 정부 ; 또는)

- C : any government established with the assistance or cooperation of the Japanese Imperial Government; or (일본제국정부의 원조 또는 협력에 의해 설립된 모든 정부 ; 혹은)

- D : any government which was an ally of the Japanese Imperial Government. (일본제국정부의 동맹자였던 모든 정부)

(4) RECORD- The term 'record' means a Japanese Imperial Government record. : 기록(RECORD) - 「기록(RECORD)」이라 함은 일본제국정부기록을 의미한다.

(b) ESTABLISHMENT OF INTERAGENCY GROUP - 관계부처조사단의 설립

(1) IN GENERAL- Not later than 60 days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the President shall designate the Working Group established under the Nazi War Crimes Disclosure Act (Public Law 105-246; 5 U.S.C. 552 note) to

also carry out the purposes of this title with respect to Japanese Imperial Government records, and that Working Group shall remain in existence for 3 years after the date on which this title takes effect. Such Working Group is redesignated as the 'Nazi War Crimes and Japanese Imperial Government Records Interagency Working Group'. : 총론 - 본 법 시행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은 나치전쟁범죄정보공개법(Nazi War Crimes Disclosure Act - Public Law 105-246; 5 U.S.C. 552 note)에 의해 설립된 조사단(Working Group)을, 동시에 일본제국정부기록에 관한 본 법 목적의 수행에 맞도록 임명해야 한다. 또한 이 조사단은 본 법이 발효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이 조사단을 「나치전쟁범죄 및 일본제국정부기록 관계부처합동조사단(Nazi War Crimes and Japanese Imperial Government Records Interagency Working Group)」이라 개칭한다.

(2) MEMBERSHIP- Section 2(b)(2) of such Act is amended by striking '3 other persons' and inserting '4 other persons who shall be members of the public, of whom 3 shall be persons appointed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Act in effect on October 8, 1998.' : 구성원 - 상기(나치) 법의 섹션 2(b)(2)를 수정해, 「다른 3명」을 삭제하고 「다른 퍼블릭 멤버 4명, 단 3명은 실제로는 1998년 10월 8일에 본 법의 규정에 의해 임명된 인물인 것으로 한다」를 삽입한다.

(c) FUNCTIONS- Not later than 1 year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the Interagency Group shall,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consistent with section 803 : 임무 - 본 법이 시행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계부처조사단은 최대한 섹션 803과 합치하도록

(1) locate, identify, inventory, recommend for declassification, and make available to the public at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all classified Japanese Imperial Government records of the United States; : 합중국의 모든 기밀로 취급된 일본제국정부기록을 탐색, 확인, 색인화하고, 기밀해제를 권고하며, 또한 국립문서보관소 기록관리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에서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

(2) coordinate with agencies and take such actions as necessary to expedite the release of such records to the public; and : 각 부처와 협력하여 이들 기록의 공개를 촉진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를 위함과 아울러

(3) submit a report to Congress, including the Committee on Government Reform and the Permanent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the Committee on the Judiciary and the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of the Senate, describing all such records, the disposition of such records, and the activities of the Interagency Group and agencies under this section. : 이들 기록의 전부, 이들 기록의 처리결과 및 본 섹션에서 의거한 관계부처조사단과 각 부처의 활동을 기재한 보고서를 하원의 정부개혁위원회 및 정보상설위원회, 상원의 법무·정보위원회를 포함한 의회에 제출한다.

(d) FUNDING- There is authorized to be appropriated such sums as may be necessary to carry out the provisions of this title. : 재정 - 본 법의 조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할당받을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SEC. 803. REQUIREMENT OF DISCLOSURE OF RECORDS. : 기록공개의 필요조건

(a) RELEASE OF RECORDS - Subject to subsections (b), (c), and (d), the Japanese Imperial Government Records Interagency Working Group shall release in their entirety Japanese Imperial Government records. : 기록의 공개 - 다음의 (b), (c) 및 (d)에 의거해, 일본제국정부기록 관계부처합동조사단은 일본제국정부기록을 전면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한다.

(b) EXEMPTIONS - An agency head may exempt from release under subsection (a) specific information, that would : 예외 - 부처의 장관은 아래와 같은 특성의 정보를 (a)항에 의거한 공개로부터 제외할 수 있다.

(1) constitute an unwarranted invasion of personal privacy; :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부당하게 침범하는 경우

(2) reveal the identity of a confidential human source, or reveal information about an intelligence source or method when the unauthorized disclosure of that source or method would damage the national security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 정보원 또는 정보수단의 불법적인 폭로에 의해 합중국의 국가안전보장상의 이해가 손상되리라 판단될 때에 기밀의 인적요원의 신원을 폭로하거나 또는 정보원 혹은 방법에 관한 정보를 폭로하는 것

(3) reveal information that would assist in the development or use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 대량파괴 병기의 개발 또는 사용에 있어서 유익한 정보를 폭로하는 것

(4) reveal information that would impair United States cryptologic systems or activities; : 합중국의 암호 시스템 또는 활동을 손상시키는 정보를 폭로하는 것

(5) reveal information that would impair the application of state-of-the-art technology within a United States weapon system; : 합중국의 무기 시스템에 있어서의 최신기술의 적용을 손상시키는 정보를 폭로하는 것

(6) reveal United States military war plans that remain in effect; : 지금도 유효한 현행의 합중국 군사전쟁계획을 폭로하는 것

(7) reveal information that would impair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a foreign government, or

undermine ongoing diplomatic activities of the United States; : 합중국과 외국정부와의 관계를 손상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또는 진행중인 합중국의 외교활동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를 폭로하는 것

(8) reveal information that would impair the current ability of United States Government officials to protect the President, Vice President, and other officials for whom protection services are authorized in the interest of national security; : 국가안전보장상의 이해로 보호업무가 공인되어 있는 대통령, 부통령 그 외의 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합중국 정부관리의 현재 능력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를 폭로하는 것

(9) reveal information that would impair current national security emergency preparedness plans; or : 현행의 국가안전보장 비상사태 준비계획을 손상시키는 정보를 폭로하는 것 ;

(10) violate a treaty or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 조약 또는 다른 국제협정에 위반하는 것.

(c) APPLICATIONS OF EXEMPTIONS - 예외의 적용

(1) IN GENERAL- In applying the exemptions provided in paragraphs (2) through (10) of subsection (b), there shall be a presumption that the public interest will be served by disclosure and release of the records of the Japanese Imperial Government. The exemption may be asserted only when the head of the agency that maintains the records determines that disclosure and release would be harmful to a specific interest identified in the exemption. An agency head who makes such a determination shall promptly report it to the committees of Congress with appropriate jurisdiction, including the Committee on the Judiciary and the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of the Senate and the Committee on Government Reform and the Permanent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 총론 - (b)항의 (2)부터 (10)에 규정된 예외를 적용할 때에는, 일본제국정부기록의 폭로와 공개가 공중의 이익에 필적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부처의 장은 예외로 지정된 특성의 이해에 유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보의 폭로나 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부처의 장관은 상원의 법무위원회 및 정보위원회와 하원의 정부개혁·정보상설위원회등 적절한 권한을 갖는 의회의 위원회에 즉시 그것을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2) APPLICATION OF TITLE 5- A determination by an agency head to apply an exemption provided in paragraphs (2) through (9) of subsection (b) shall be subject to the same standard of review that applies in the case of records withheld under section 552(b)(1) of title 5, United States Code. : 타이틀 5의 적용 - (b)항의 (2)에서 (9)에 규정된 예외를 적용하려면 관계부처 장관의 결정이 합중국규칙타이틀5의 섹션552(B)(1)에 의거해 보유한 기록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심사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d) RECORDS RELATED TO INVESTIGATIONS OR PROSECUTIONS- This section shall not apply to records : 조사 또는 소추에 관계하는 기록 - 본 섹션은 다음의 기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related to or supporting any active or inactive investigation, inquiry, or prosecution by the Office of Special Investigations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or : 법무성 특별조사실에 의한 어떠한 적극적 혹은 소극적인 조사, 심사 또는 소추에 관련되어 있거나 도움이 되는 것

(2) solely in the possession, custody, or control of the Office of Special Investigations. : 특별조사실만이 소유, 보관 또는 관리하는 것 ;

SEC. 804. EXPEDITED PROCESSING OF REQUESTS FOR JAPANESE IMPERIAL GOVERNMENT RECORDS. : 일본제국정부기록에 대한 청구수속의 촉진

For purposes of expedited processing under section 552(a)(6)(E) of title 5, United States Code, any person who was persecuted in the manner described in section 802(a)(3) and who requests a Japanese Imperial Government record shall be deemed to have a compelling need for such record. : 합중국 규칙 타이틀 5의 섹션의 552(a)(6)(E)에 의거하는 급박한 처리를 위해서, 섹션802(a)(3)에 언급되어 있는 방법으로 박해를 받았거나, 한편 일본제국정부기록을 청구하고 있는 어떠한 인물도 이러한 기록을 요구하는 급박한 필요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SEC. 805. EFFECTIVE DATE. : 시행일

The provisions of this title shall take effect on the date that is 90 days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 본 법의 규정은 본 법 제정의 90일 후에 발효한다.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President of the Senate.

END

화인스타인¹³⁾ 미 상원의원의 성명¹⁴⁾



본 법안을 논할 때 나의 어떤 말도 반일적(反日的)이라고 보지 않기를 처음에 확실하게 밝혀두고자 합니다. 저는 북 캘리포니아 일본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 있어서의 일본, 미국, 중국 및 그 외의 나라들의 사이에 적극적인 관계를 전진시키고, 촉진하며, 발전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 왔습니다. 오늘 제안하는 입법은, 다수의 캘리포니아주민에 의해 적극적으로 요구되어 온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자행되었다고 생각되는 잔학행위나 독가스 및 세균전의 실험에 관한 정보를 공적기록으로부터 분리시켜 내려는 노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상원에 있어서의 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평화롭고 안정된 한태평양 공동체의 발전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목표를 향해 20년 이상이나 활동해 왔습니다. 본 법의 도입은, 특히 캘리포니아의 중국계 미국인들에게 아직껏 남아 있는 상처를 달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반세기전에 제2차 세계대전이 -그리고 전쟁과 함께 일본의 화학 및 생물학병기실험계획도- 끝났습니다만, 일본의 전시의 활동에 관한 기록과 문서가 합중국 정부의 문서관이나 소장창고에 기밀 취급되어 숨겨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 법이 필요하게 된 이유입니다. 한층 더 나쁜 것은, 몇 명의 연구자에 의하면, 이러한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주의 하게도 파기되고 있습니다. 포로수용소에 있어서 이 실험의 재료가 된 많은 미국의 퇴역군인에 있어서, 또한 그와 같은 실험재료가 되었던 많은 중국 그 외 아시아의 민간인에 있어서도, 진상이 전면적으로 밝혀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극동국제군사법정으로 밝혀진 정보에 의하면, 이른바 「심양사건(奉天事件)」이 일본의 만주 점령의 구실이 된 1931년 이래, 일본제국군은 중국 민간인, 연합국 포로, 혹은 일본의 민간인에 대해서도 많은 생물학전, 화학전의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실험 가운데에서 가장 악명 높은 것은, 일본군의 군의관, 이시이 시로(石井四郎) 장군하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는 1930년대 후반까지 중국에, 세균배양설비, 시험장, 인체실험 피험자 구치소, 세균병기 제조 설비, 및 인체실험 희생자의 최종 처리용 소각로를 갖춘 큰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이시이 장군의 주공장은, 731부대라고 하는 암호명으로 조업하고 있었습니다. 전범재판으로 밝혀진 증거와 많은 학자의 그 후의 저작에 의해서도, 일본이 이러한 화학전 생물학전의 실험을 실시한 것, 일본 제국군이 전쟁중에 화학, 생물학 병기의 사용을 기도했다는 점에는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Ningbo(寧波)와 Changde(常德)의 거리에서 페스트 사용에 대한 보고도 있습니다. 게다가 「우려되는 아시아 연구자의 뷰렛틴」 잡지의 존·파웰의 1980년 논문이 분명히 한 것처럼 「이시이가 중국인 이외에도 연구소의 실험 재료로써 사용한 사실이 입증된 이상에는, 그가 미국인 포로와 아마 영국인, 어쩌면 일본인마저도 사용했다고 추측해도 잘못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활동의 기록의 몇개인가는 도쿄전범재판중에 밝혀졌고, 다른 것도 그 후 정보 공개법에 의거한 청구로 햇빛을 보았습니다만, 일본 점령중에 미군에 이관된 많은 그밖의 문서는 과거 50년간 계속해서 은폐되어 왔습니다. 본 법이 필요한 것은, 확실히 이러한 이유에 의한 것입니다. : 세계는, 무엇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상세하고 완전한 기록을 손에 넣을 권리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 노스릿지학교의 실든 하리스 역사학 명예교수는 금년 10월 7일, 제 앞으로 썼던 :

13) 다이안·화인스타인 상원의원(캘리포니아주 선출·민주당)
14) 화인스타인 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당시에 발표한 성명서. 전쟁피해조사회법을 실현하는 시민회의 제공 <http://www.geocities.co.jp/HeartLand-Keyaki/5481/JIADA2.htm>

「아카데미한 역사가로서의 나의 능력에 대해, 문서를 발굴할 때의 연구자의 곤란과 이러한 전쟁범죄에 관한 나의 입증에 대해 증언 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법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에서 몇개의 문서고 조사에 문을 닫고 있습니다. ... 앞으로 취급할 주의 문서-문서 관리자나 FOIA 담당관의 정의에 의하면-가 지금도 파기되고 있습니다」. 실든 교수의 편지는 게다가 그가 입수한 화학전·생물학전에 관련한 문서파기의 실례를 3개 예로 들고 있습니다 : 유타주 다그웨이 시험장에서의 것, 메릴랜드주 포트데릭스에서 의 것, 그리고 국방성에서의 것.

이 법률에서는, 제정 후 60일 이내에 일본제국군기록 관계부처합동조사단이 국무성과 합중국 문서관의 대표를 포함하여 설립되어 합중국의 모든 일본제국군기록을 탐색해 확인하고, 공개를 권고하게 됩니다. 이 관계부처합동조사단은 3년간 존속합니다만, 탐색, 확인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분류를 권고하여, 합중국의 모든 분류된 일본제국군기록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부공개시점에서 다른 부처와 협력해, 국회에 활동보고를 제출합니다. 기밀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문서를 기밀 해제하고, 게다가 이 프로세스가 질서정연하고 신속히 진행되는 것을 확실히 하는 최선의 길은, 이러한 관계부처합동조사단의 설립에 있다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본 법은 또 관계부처합동조사단이 다음의 근거에 기초하여, 기록의 공개를 거부할 것을 허락하는 예외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의 프라이바시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기록 ;
2. 합중국의 국가안전보장 또는 정보능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기록 ;
3. 「합중국과 외국 정부와의 관계를 중대하게 또는 명백하게 해친다」고 판단되는 기록 ;
4. 화학적 생물학적 잠재 능력의 개발에 공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록.

이 법안을 제안할 때, 제가 목적으로 한 것은 인체실험의 희생자를 살리는 것이고, 또한 「진리는 우리들을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속담을 가슴에 새겨, 21세기를 향해 좀 더 평화로운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쌓아 올리는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제1에, 이 자료의 기밀 해제와 공개는, 제2차 세계대전중에 일본군에 의해 행해진 화학 생물학전 실험의 희생자가, 또 한층 그들의 가족이나 자손들이 50년전에 그들에 행해졌던 것에 대해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되겠지요. 만약 상처가 치유되어야 한다고 하면, 무엇이 일어났는가에 대해 완전한 설명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제2에, 그리고 확실히 중요한 것은, 이 법률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성실한 대화와 토론의 환경 만들기를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나라들과 사람들이 금세기에 우리를 괴롭혀 온 문제를 제거하고, 다음 세기에 있어 평화롭고 번영한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쌓아 올리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시아의 나라들이 평화로운 공동체를 쌓아 나가려면, 과거를 완전하고 공정, 성실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에 의해서만,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는 것을 피해 미래를 위해서 좀 더 올바른 세계를 구축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아브라함·쿠퍼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제2차 세계 대전의 종결 이래, Sweden과 스위스와 같이 중립국이 용기를 분발해서, 제2차 세계대전시기 기록의 고통으로 가득 찬 재검토를 실시한 이상, 일본이 그에 미치지 못한 다는 것이 허락될수 있을까?」.

1999년 11월 23일

제안이유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전후하여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되어 일제의 군인, 군속, 노무, 군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해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나 지금까지 정부차원에서 정확한 피해조사나 진상 규명을 위한 대책이 미비하였기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인권회복과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평화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골자

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라 함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전후하여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속·노무자·군 위안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강제 동원되어 입은 피해를 말함(안 제2조).

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의한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해 시·도지사소속하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안 제3조).

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1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함(안 제4조).

라.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희생자와 그 유족의 일제강점하강제 동원피해 관련 피해신고를 접수받기 위한 신고처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함(안 제13조).

마.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진상조사를 완료하여야 하고,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진상조사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일제강점하강제 동원피해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안 제18조 및 제21조).

바. 정부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희생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위령제례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령묘역 조성·위령탑건립·사료관건립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사.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로 인하여 호적등재가 누락되거나 호적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호적에 등재하거나 호적의 기재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아. 정당한 이유없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와 실지조사의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33조).

발 의 자

김원웅·김홍신·안영근·오세훈·정인봉·김희선·장영달·이창복·김영춘·이부영·박재욱·장성민
서상섭·안상수·김근태·심규철·김용학·이미경·원희룡·심재권·조정무·송영길·이재정·김태홍
김경천·조용규·정범구·정병국·엄호성·김성호·김성순·주진우·김영환·곽치영·윤경식·윤두환
이근진·이주영·이인기·김민석·김영진·정장선·송훈석·김충조·박명환·윤여준·김화중·정대철
박양수·송석찬·남경필·이종걸·김호일·이호웅·임종석·배기선·설 훈·이방호·김부겸·하순봉
장성원·김옥두·유재건·정형근·김덕룡·추미애·박주선·이강래·유성근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평화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라 함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된 군인·군속·노무자·군 위안부 등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 ② "희생자"라 함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후유 장애가 남아있는 자로서 제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 희생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 ③ "유족"이라 함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 ①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의한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2.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국내의 자료의 수집과 분석 및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유골 발굴 및 수습에 관한 사항
 4.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5. 사료관, 위령공간조성에 관한 사항
 6.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에 대한 국가의 입장표명,정책수립등에 관한 건의사항
 7.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호적등재에 관한 사항
 8. 기타 진상규명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④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1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⑥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결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이법의시행에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6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② 위원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및 형의 선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③ 제2항 중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느냐 여부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정한다.

제7조(위원의 결격 사유)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로 등록된 자
제8조(의결정족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사무국의 설치)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③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④ 소속 직원중 5급 이상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⑤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직원의 신분보장) 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입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의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해 시·도지사 소속 하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에 관한 사항
 2.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3.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해 시·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희생자 및 유족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진상조사의 신청 및 피해신고)

- ① 희생자 또는 희생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있는자는 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신청하거나 피해신고를 할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상조사 신청을 위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처를 명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체재하거나 거주하는 자를 위하여 재외공관에도 신고처를 둔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수없는 특별한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수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의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 ④ 위원회가 진상조사개시결정을 한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피해 신고를 받을수있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와 특별한 사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신청의 각하)

- ① 위원회는 진상조사의 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할 수 있다.
 1. 신청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청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는경우
 3. 위원회가 각하한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그 신청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제15조(진상조사의 개시)

- ① 위원회는 진상조사의 신청이 제1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지체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조사를 할수 있다.

제16조(진상조사 방법)

- ①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희생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희생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희생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관계기관·관계시설·단체 등에 대한 관계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4.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가 발생한 장소 등에 대한 실지조사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요청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기관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관계기관 또는 단체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 당해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 등에게 보여야 한다.
- ⑥ 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주거·동행명령을 하는 이유·동행할 장소·발부연월일·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처벌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인상·체격 그 밖의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수있다.
- ⑧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 ⑨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 ⑩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 교도소 또는 군 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중인 대상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의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 ⑪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의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 ⑫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요구를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그 자료가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일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⑬ 위원회는 직접 또는 관계기관을 통하여 외국의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관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에 대하여 그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국가의 주재공관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의 범위)

- ①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일제강제동원 피해에 관한 조사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이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에 관하여도 조사할수있다.
- ② 위원회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당시의 사회적·역사적 상황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다

제18조(조사의 기간)

- ① 위원회는 최초의 진상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2년 이내에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3월 전에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위 기간 연장은 2회를 넘을 수 없다.

제19조(결정)

- ① 위원회는 당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인지 여부
 2. 당해 피해의 원인·배경
 3. 희생자 및 유족
- ② 위원회는 전항의 결정을 하는경우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을 한 후, 필요할 경우 피해 진상 등에 대하여 공표하거나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20조(위원 등의 보호)

- ① 누구든지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 ② 누구든지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고·정직·감봉·전보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 ③ 위원회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에 관련된 증거·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위원회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 ① 위원회는 제18조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보고서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의 진상과 피해자의 피해 상황
 2.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의 발생원인
 3.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밝히지 못한 원인
 4.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 희생자·유족 그 밖의 관계자 및 국가의 책임
 5.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희생자와 그 유족, 관련 민간단체의 노력의 내용과 그로 인한 성과 및 피해
 6. 진상조사결과 진상이 밝혀지지 아니한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의 내용과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원인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 희생자와 그 유족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해야 할 조치
 2. 조사결과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와 그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해야 할 조치
 3. 위원회의 조사내용과 조사결과 얻은 자료 등의 처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제22조(위원회의 책임 면제) 위원회, 위원, 직원 및 위원회의 위촉 또는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감정인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작성·공개된 보고서 또는 공표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위령사업) 정부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 희생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① 위령공간(위령묘역, 위령탑, 위령공원) 조성
- ②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 사료관 및 박물관 건립
- ③ 그 밖의 위령 관련 사업

제24조(역사기억재단설립)

- ① 정부는 위령공간,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 사료관 및 박물관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독립기구로서 재단법인인 역사기억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충분한 기금을 출연한다.
- ② 제1항은 다른 형태의 기금 출연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③ 역사기억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담당한다.
 1. 위령공간의 운영·관리
 2.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 사료관 및 박물관의 운영·관리
 3. 추가진상조사사업의 지원
 4.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 관련 문화·학술 활동의 지원
 5. 그 밖에 필요한 사업
- ④ 역사기억재단의 독립성은 보장되며, 정부는 재단 출연시 출연하는 이외에 역사기억재단에 대한 감독권만을 갖는다.

제25조(호적등재)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로 인하여 호적등재가 누락되거나 호적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호적에 등재하거나 호적의 기재를 정정할수있다.

제26조(비밀준수의무)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위원회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사람,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불이익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에 한 신청·신고·진술·자료제출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8조(위원회와 다른 기관의 협력)

-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의 내용과 절차 및 결과에 관하여 민간단체의 자문 및 의견을 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특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나 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수행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원회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의 관계자나 전문가는 그 업무의 범위안에서 위원회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제29조(공무원 등의 파견)

-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동일시 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①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
- ②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
- ③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계로써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

제3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① 정당한 이유없이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자
- ②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되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거짓의 증거를 제출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
- ③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준수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제33조(과태료)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진술서제출요구, 출석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제1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기피한 자
 4.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공포,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 ② (위원의 임기 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 ③ (대통령령의 제정) 위원장은 이 법 시행일 전이라도 국무총리에게 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특별법발의 기자회견문

대한민국 국회는 1965년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당시 일제 강점기 한국인이 겪은 시련과 청구권 문제를 의제로 논의한 이후 지금까지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하여 제대로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일본국회에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문제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법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진상규명을 위하여 전쟁피해조사회법(일명 항구평화조사국설치법안-국립국회도서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제정하려는 운동 또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나치전범기록 관계부처합동조사단(Interagency Working Group)이 나치 전범자료 조사가 일단락 됨에 따라 작년 5월 일본 전범기록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의회차원에서는 일본제국군관련 모든 정보의 공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고, 100여명의 연방공무원을 자료 소재 파악과 문서비밀취급 해제 작업에 동원하고 있다. 1999년말 100억마르크의 기금을 조성하여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안에 합의한 독일에서는 현재 생존하고 있는 강제노동피해자가 년 10%씩 사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금의 수급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조사작업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일본의 재판소에는 약 60여건의 보상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1999년 이래 일본 정부 및 기업을 상대로 국내외 관계자들의 징용 및 위안부 소송 등이 제기되어 이미 50여건에 이르고 있는 현실이다.

일제강점하 국외로 동원된 피해자가 150만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국내징용 피해자 역시 600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피해의 심각성과 국내외적인 노력에 비하여 대한민국의 정부는 이제까지 일제의 침략전쟁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의 실태, 피해자가 처해있는 현재의 상황, 그리고 전쟁에 의해 동원되어 지금까지 해외에 잔류하고 있는 위안부를 비롯한 한국인 피해자들 현황조차 조사한 바가 없다. 또한 해외에서 희생된 희생자의 유골들이 어떠한 환경에 놓여져 있고 왜 국내로 송환조차 되고 있지 못한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망해 보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끊임 없이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공식참배를 통해 군국주의로의 회귀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으며,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공식화시키기 위한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자행한 침략전쟁으로 인하여 겪어야 했던 우리민족의 피해사실에 대해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게 한 우리 스스로의 책임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침해받은 인권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시민단체와 연구단체들이 연대하여, 일제강점기 우리국민이 겪어야 했던 생명, 신체, 재산상의 모든 피해에 대해 그 진상을 규명하고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고자 한다. 우리는 여야, 보수와 진보, 신구세대를 넘어서 이 법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하루빨리 심의·의결되어 역사의 진실이 규명되고 정의가 이땅에 실현되길 바란다.

2001. 10. 12

법안 공동발의자 김원웅 외 68명 의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 규모

1. 징용(노무자)의 수

	계	사망 및 행방불명 (0.5%)	복원(99.5%)	비고
조선내 도내 징용	5,366,098명	26,830명	5,339,269명	자료 대장성 관리국(1947년) 전쟁과 조선통치 노무의 송출 표1~7근거 10%추정(사망) 일본본토(내지) 90%(복원) 사망자 행방불명 합계 220,517인 복원 7,295,726인
조선내 관알선	422,397	2,112	420,285	
조선내 현원 징용	260,145	1,300	258,845	
조선내 국민징용	43,679	218	43,461	
조선내 군요원	33,861	169	33,692	
계	6,126,180	30,629	6,095,551	
해외 징용	724,727	72,478	652,309	
해외 군요원	69,932	6,993	62,939	
해외 관알선	327,013	32,701	294,312	
해외 국민징용	222,082	22,208	199,874	
남방 군요원	40,318	4,031	36,287	
남방 국민징용	5,931	593	5,338	
계	1,390,063	139,006	1,251,057	
합 계	7,516,243	169,633	7,346,610	

2. 조선인 군인·군속의 수

	계	사망 및 행방불명 (14%)	복원(86%)	비고
육군특별지원병	17,664명	2,473명	15,191명	육군군인 186,279 해군군인 23,000 육군군속 74,838 해군군속 79,348 계 363,465인 사망및 행방불명 추정14%(50,884) 복원추정 86% 312,581명
해군특별지원병	3,000	420	2,580	
학도특별지원병	4,385	614	3,771	
징병 1기(육군)	90,000	12,600	77,400	
징병 1기(해군)	20,000	2,800	17,200	
징병 2기(육군)	74,230	10,392	63,838	
군속 (육군)	74,838	10,477	64,361	
군속 (해군)	79,348	11,108	68,240	
계	363,465	50,884	312,581	

2. 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 <결성취지 및 구성>

1. 결성취지

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는 일제하 조선인 강제동원피해에 대한 국가적 진상규명을 통하여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는 한편,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여 일본군국주의의 부활기도를 저지하기 위한 법률제정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 김원웅의원을 비롯한 60여명의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이를 실질적인 법률제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의 조직적 대응이 필요하다. 지난 2000년 8월부터 비상설적으로 민족문제연구소,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역사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의 6개 단체가 중심이 되어 진상규명운동을 전개해 왔다. 이를 토대로 30개 시민·사회·노동·연구·피해자 단체가 협력하여 일제하 강제동원 진상규명 운동을 전국민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의 활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2. 구 성

- 1) 공 동 대 표 : 강만길(상지대총장)/곽동협(대구곽병원원장)/송두환(민변대표)/이남순(한국노동위원장)
- 2) 고 문 : 윤정옥(정대협前대표)/이만열(숙명여대교수)/전기호(경희대교수)/조동걸(국민대 명예교수)
- 3) 공동집행위원장 : 이정식(한국노동조합총연맹본부장)/최봉태(변호사)
- 4) 집행단체 : 연구단체(4개):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한일민족문제학회/피해자단체(5개):나눔의집,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시민단체(3개):3.1여성동지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5) 상 설 기 구 조사연구실:한일민족문제학회/대의협력실: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법률실:민변
- 6) 사 무 국 : 사무국장:김은식(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사무간사:우수미(민족문제연구소)
- 7) 가 입 단 체 :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역사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과소비추방범국민운동본부, 나눔의집, 독도수호대, 독립기념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백범정신실천거레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3.1여성동지회, 시베리아사포회, 우리역사바로알기시민연대,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 우키시마호폭침피해자배상추진위원회, 원폭피해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태평양전쟁희생자광주유족회,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평화시민연대,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한국정신대연구소, 한국청년연합(접촉중), 한일민족문제학회, 홍익청년연합

3. 활 동

- 조사협력실을 통한 조사, 대외협력실을 통한 한미일연대, 법률실을 통한 법률제정·검토·소송
- 안전상정 및 통과를 위한 행정자치위원회위원, 전문위원, 여야당대표 방문활동
- 한미일연대집회 및 공청회를 통한 입법청원활동
- 1월內 국내주요인사 1000명 서명운동 전개(전 국회의원 서명포함)
- 대정부, 청와대, 여야당대표 앞으로 탄원서제출
- 소식지 및 자료집 발간사업 등 법률통과를 위한 다양한 활동전개

특별법추진속보

2002년 1월 14일(월)
창간호(매주 월요일 발행)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38-29 금은빌딩3층 (T)969-0226 (F)965-8879 (E-mail)minjok@minjok.or.kr / woosumi97@hanmail.net

◎ 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 발족

2001년 12월 11일 화요일 오후4시 역사문제연구소 강당에서 결성대표자회의를 통해 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가 발족했다. 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는 2000년 8월부터 비상설적으로 활동을 전개해왔던 민족문제연구소,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역사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의 운동을 바탕으로 일제하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국가적 진상규명을 통해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고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기도를 저지하기 위한 법률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 조직구성

공동대표	강만길(상지대총장) 곽동협(대구곽병원원장) 송두환(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대표) 이남순(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고문	윤정옥(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前대표) 이만열(숙명여대 교수) 전기호(경희대 교수) 조동걸(국민대 명예교수)
공동 집행위원장	이정식(한국노동조합총연맹대의협력본부장) 최봉태(변호사)
집행단체	연구단체(4개)/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한일민족문제학회 피해자단체(5개)/나눔의집,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시민단체(3개)/3.1여성동지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상설기구	조사연구실 : 한일민족문제학회 중심 대의협력실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중심 법률실 :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중심
사무국	사무국장 : 김은식(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사무간사 : 우수미(민족문제연구소)
가입단체	민족문제연구소,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역사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과소비추방범국민운동본부, 나눔의집, 독도수호대, 독립기념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백범정신실천거레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3.1여성동지회, 시베리아사포회, 우리역사바로알기시민연대,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 우키시마호폭침피해자배상추진위원회, 원폭피해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태평양전쟁희생자광주유족회,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평화시민연대,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한국정신대연구소, 한국청년연합(접촉중), 한일민족문제학회, 홍익청년연합

◎ 특별법 발의 및 주요골자

2001년 10월 12일 김원웅의원을 비롯한 69명의 국회의원이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특별법 발의는 일제하 조선인 강제동원피해에 대한 국가적 진상규명을 통하여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침해받은 인권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시민단체와 연구단체들이 연대하여, 일제강점기 우리국민이 겪어야 했던 생명, 신체, 재산상의 모든 피해에 대해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 주 요 골 자 >

- 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라 함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전후하여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속·노무자·군 위안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강제 동원되어 입은 피해를 말함(안 제2조).
- 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의한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해 시·도지사소속하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안 제3조).
- 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1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함(안 제4조).
- 라.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희생자와 그 유족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관련 피해신고를 접수받기 위한 신고서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함(안 제13조).
- 마.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진상조사를 완료하여야 하고,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진상조사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안 제18조 및 제21조).
- 바. 정부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희생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위령제례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령모역 조성·위령탑건립·사료관건립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 사.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로 인하여 호적등재가 누락되거나 호적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호적에 등재하거나 호적의 기재의 기재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 아. 정당한 이유없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자료나 물건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와 설치조사의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33조).

◎ 조사위원회 활동

2001년 12월 19일(수) 오후 2시-6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의 주최로 민족문제연구소와 한일민족문제학회가 주관하여 "구술자료로 복원하는 강제연행의 역사"라는 주제로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 심포지엄은 나라와문화를생각하는의원모임, 독립기념관, 백범정신실천거레연합, 한국마사회에서 후원을 해주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1달동안 10명의 연구원들이 서울, 전주, 광주지방을 직접 돌며 조사한 군인, 군속, 노무, 근로정신대 등 강제연행의 피해자 55명의 구술자료를 바탕으로 정혜경(한일민족문제학회), 김인덕(국립중앙박물관), 표영수(서울시

밀린것이라서 이번에는 상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후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갈 경우에 법의 시급성에 따라 통과되는데 얼마가 걸릴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한다.

◎ 조사위원회 활동

2002년 1월 14일 종로구 계동 한 음식점에서 남신동(서울대교육사교), 우수미(민족문제연구소), 이흥기(서울대 박사과정), 정혜경(한일민족문제학회), 표영수(한일민족문제학회), 김은식(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등 6명이 보인 가운데 2001년 구술작업평가를 가졌다. 평가회에서는 지난해 구술작업에 있어 준비와 기간이 부족했고 전문적인 연구진들이 부족하여 친필일물적인 작업이 진행됐던 점을 지적했고 지방에서의 구술작업에서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장기적인 사업 및 자료정리를 위해 조사위원회 담당간사의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군인군속, 특히 남양군등 경험자들의 재작업이 필수적으로 요망되었다. 독립기념관에서 다시 지원의 의사를 밝힌만큼 2002년 조사위원회에서는 국내 5개지역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를 중심으로 구술작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짝막한 금주 회원단체 소식

※ 매주 발행되는 특별법추진속보에 각 단체의 강제동원관련 소식을 실기를 원하는 회원단체는 woosumi97@hanmail.net으로 짝막한 소식을 보내주세요~

- 1)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위해 설립된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의 홈페이지http://historyfund.com에 강제동원진상규명소식란을 만들었다. 홈페이지를 통해 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작업이 여론화 될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 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는 '아시아여성유한평화국민기금'의 한국내 지급사업 연장에 대해 1월 14일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 3)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에서는 1월 16일 서울지방방법원에서 진행된 유골인도소송 결심공판에서 한국정부를 상대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청원활동과 추가제소를 결의했다.
- 4) <일본제철정용피해자>들은 1월 19일 대전시청에서 전국대회를 갖고 일본제철정용피해자회를 공식출발시키고 향후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화해교섭에 나설것을 발표했다.
- 5) <우키시마호흡침상규명회>는 국회 외교통상위원회로부터 우키시마호흡침사건이 해방이후의 문제이므로 한일협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 6) <역사문제연구소> 한일관계반은 1월 21일 원폭피해자 이강령씨 재판 판결문을 검토하는 학습회를 가졌다.
- 7) <나눔의집>은 1월 17일 나눔의 집을 후원하는 교사모임 발기모임을 갖고 전국을 순회하며 할머니 그림, 사진전시회와 1일 찾집을 개최하고 있다.
- 8)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http://1945815.or.kr 2002년 제5차 정기총회 개최를 알려드립니다. 일시: 2002년 1월 26일(토) 오후 3시 장소: 광명원 지하강당 내용: 2002년 제5차 정기총회 및 뒷풀이

◎ 해외의 진상규명 뉴스

- 1) <미즈비시히로시마정용자재판을지원하는모임>에서 2월9일 히로시마현립체육관 회의실에서 고마자와대학의 고쇼 타다시 전임교수를 강사로 초청하여 '강제연행 미분금은 어떻게 몰수되었는가'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한다.
- 2) 日本 <전쟁피해조사법률 실현하는 시민회의>에서는 '과거

의 극복과 진상규명-일.미.한에서 추진하는 역사사실조사'라는 보고서를 1월에 발간했다. (http://www.geocities.co.jp/HeartLand-Keyaki/5481/kokufuku.htm)

3) <아시아연구질랜드저널>에서는 지난 2001년 12월 "GHOSTS OF THE PAST: THE JAPANESE HISTORY TEXTBOOK CONTROVERSY"라는 주제로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한,중,일 역사학자들의 견해에 대해 조망하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http://www.vcn.bc.ca/alpha/, http://www.gainfoorg/)

◎ 회비납부방법

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는 회원단체의 회비 및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회원단체는 1년 6만원, 집행단체는 월 3만원의 회비를 아래의 계좌번호로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농협 : 140-01-010570(예금주:강제동원)
- 주택은행 : 432101-01-165586(예금주:강제동원)
- 조흥은행 : 321-04-606606(예금주:강제동원)

2002년 2월 4일
"韓·美·日 연대 공청회 및 집회"
"특별법제정독립군발대식"

※ 회원단체 소속의 피해자 및 유족들이 총궐기하여 2월 내에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주시시오!!

■ 2월 4일 한미일 연대공청회 및 특별법제정독립군발대식

- 1) 주제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어디까지 왔나
- 2) 목적 :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의 진상규명을 위해 한국, 미국, 일본에서 전개되고 있는 운동의 현황과 전망을 진단해 올바른 한일관계의 재정립을 그 목적으로 한다.
- 3) 일자 : 2001년 2월 4일(월요일) 오전 10시 - 12시 30분
- 4)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5) 주최 : 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
- 6) 일정 : 인사말 / 참가인사소개 / 발제(4인) / 토론
 - ① 한국에서 바라본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필요성과 과제 -장원익변호사(진상규명특별법법률안작성 변호사)
 - ② 일본의 진상조사법 심의 현황과 과정과 향후의 방향 -니시가와시게 노리(전쟁피해조사법률실현하는시민회의 대표)
 - ③ 조선인강제연행의 실태와 조선인강제연행조사단의 활동 -홍상진(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측조선인중앙본부 사무국장)
 - ④ 미국의 전후보상소송 현황과 진상규명의 필요성 -정연진(재미일본군·정용 정의회복 위원회 위원장)
- 7) 특별법제정독립군발대식

■ 2월 4일 한미일 연대집회

- 1) 주제 : 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특별법 조속통과촉구 집회
- 2) 목적 : 일제강제동원피해자들이 총궐기하여 정부와 국회에 진상규명실현을 위한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규탄을 그 목적으로 한다.
- 3) 일자 : 2001년 2월 4일(월요일) 오후 2시
- 4) 장소 : 한나라당 당사앞
- 5) 주최 : 특별법 제정추진위원회
- 6) 동원규모 : 500명 예정
- 7) 일정 : 식전공연 / 개회선언 / 민중의례 / 민중가 / 개회사 / 경과보고 / 美·日연대사 / 공연 / 피해자발언 / 공연 / 성명서낭독 / 가두행진(상황에따라)

■ 발행인:강만길,곽동협,송두환,이남순 ■ 발행처: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 ■ 편집인:우수미

특별법추진속보

2002년 1월 28일(월)
제3호(매주 월요일 발행)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38-29 금은빌딩3층 (T)969-0226 (F)965-8879 (E-mail)minjok@minjok.or.kr / woosumi97@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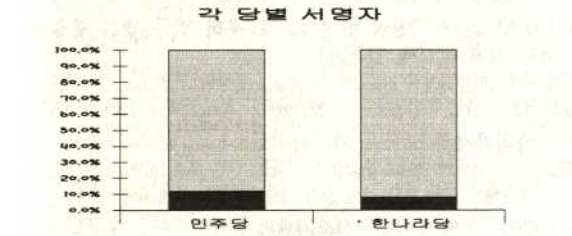
" 쏠 국회의원 서명운동 현황 "

◎ 특별법 조속통과에 서명한 의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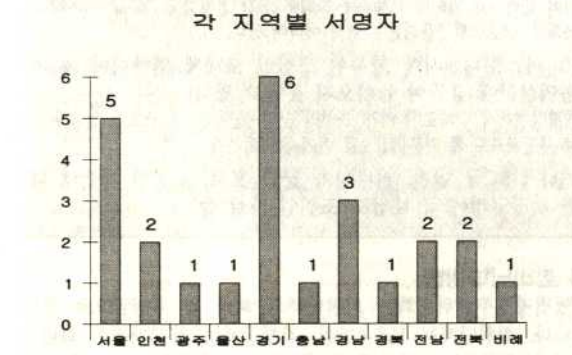
- | | |
|--------------------|-----------------------|
| 1. 권오을(한-경북안동) | 14. 이주영(한-경남창원울) |
| 2. 김덕규(민-서울중앙울) | 15. 장성민(민-서울금천/의원직박탈) |
| 3. 김부겸(한-경기군포) | 16. 장성원(민-전북김제) |
| 4. 김옥두(민-전남장흥영암) | 17. 정병국(한-경기가평양평) |
| 5. 김태홍(민-광주북울) | 18. 조성준(민-경기성남중원) |
| 6. 박희태(한-경남남해하동) | 19. 조정무(한-경기남양주) |
| 7. 송영진(민-충남당진) | 20. 조한철(민-인천서강화갑) |
| 8. 윤두환(한-울산북) | 21. 최병렬(한-서울강남갑) |
| 9. 이강래(민-전남남원순창) | 22. 최선영(민-경기부천오정) |
| 10. 이근진(민-경기고양덕양울) | 23. 최용규(민-인천부평울) |
| 11. 이부영(한-서울강동갑) | 24. 허순봉(한-경남진주) |
| 12. 이성현(한-서울서대문갑) | 25. 한화갑(민-전남무안신안) |
| 13. 이재정(민-비례) | |
- < 한나라당11명 / 민주당14명 >

◎ 각 당별 서명자 비율

민주당(118명중 14명 11.86%) / 한나라당(135명중 11명 8.15%)



◎ 각 지역구별 서명자 비율



서울(5/45)11.11%/인천(2/11)18.18%/광주(1/6)16.67%/울산(1/5)20%/경기(6/41)14.63%/충남(1/11)9.09%/경남(3/16)18.75%/경북(1/16)6.25%/전북(2/10)20%/전남(2/13)15.38%/비례(1/46)2.17%/나머지 각0%

◎ 진상규명입법화에 따른 韓·美·日 국회의원 비교

" 美 : 日 : 韓 = 100 : 34 : 10 "

한·미·일 3개국에서 각각 진상규명과 관련한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바라보는 각국 의원들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미국에서는 731부대, 위안부 문제등 일본의 전쟁범죄, 전쟁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상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작년 3월부터 문서의 비밀해제, 분류작업에 들어가 있다. (100%) 우경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일본의 중의원에서는 480명중 162명이 전쟁피해조사위원회 찬성한다고 서명했다. (34%) 그러나 정작 우리의 현안인 한국의 의원들은 서명용지를 배부한지 열흘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불과 10%도 채 안되는 25명만이 서명을 했다. 더구나 각 의원들의 보좌관들은 오래된 문제를 지금에서 진상규명이 가능하겠느냐, 당론이 아니라면 따를 수 없다, 시급한 문제들부터 다루어야 한다, 현직 장관이기 때문에 서명할 수 없다는 등 각종의 이유를 들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에 산적한 현안이 많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명만큼 시간을 다루는 문제 또한 없을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이미 80세가 넘어서고 있는 피해자들을 볼 때 이들이 돌아가시기 이전에 일제의 전쟁피해에 대해 확실하게 규명해 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989년 독일 연방의회 공청회에서 감정인 마야여사는 소련, 폴란드, 프랑스에서 적어도 1000만명이 강제연행노동자로 동원되었으며, 독일의 공업회사 뿐만 아니라 독일 제국에 월 9억 600만 시간의 임금미불노동이 강제연행 노동자로부터 흘러들어갔다고 산출했다.

얼마전 어느 한 국회의원이 강제동원된 조선인의 정확한 수치가 어느 정도 인가를 물어왔으며 우리는 아연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국회의원 신분이라면 관련부처의 공무원, 전문위원등 고급정보를 제공해 줄 인재들을 두고 있으면서도 기초적인 수치에 대해서 민간단체에 문의를 할 정도라는데 대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정확한 동원수와 미귀환자의 숫자조차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실망을 넘어 허탈감까지 안겨다주고 있다. 진정 우리의 후손들이 한심한 선조를 두었다고 원망되지 않도록 국회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 특별법제정독립군 진척상황

1중대와 2중대는 1월 18일과 1월 25일 양일간 국회를 방문하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국회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제1중대:오행석(생존자),윤경숙(유족),박남선(유족),박진부(유족),이윤제(유족),김문식(유족),권수청(유족),이순자(유족),김행진(생존자)

◆제2중대:이희백(생존자),조무연(유족),고득환(유족),최인재(유족),임옥순(유족),김충효(유족),이금수(유족),윤옥중(유족)

◆제3중대:대구정신대할머니를 중심으로 제3중대가 발족되었다. 26일 대구 광명원강당에서 열린 발족준비대회에서 제3중대는 이용수(피해자)를 중대장으로 선임하고 온라인 독립군을 모집하여 온라인상의 독립활동을 할 것을 결의함과 동시에 대통령후보들의 특별법 제정에 대한 태도를 감시하기 위한 활동을 개시하기로 결의했다.

피해자 500여명을 결성하여 특별법제정을 이룩합니다
2002년 2월 4일 여의도로 모여주십시오!!
 < 韓·美·日 연대공청회 / 집회 / 특별법제정독립군발대식 >
 * 독립군가와 독립군 참모장을 모집합니다

◎ 국회 동향

1월 25일 이회백(생존자), 조무연(유족), 고득환(유족), 최인재(유족), 임옥순(유족), 김충효(유족), 이금수(유족), 윤옥중(유족), 오행석(생존자), 윤경숙(유족), 김은식(사무국장), 우수미(사무간사)는 지난 1월 18일 국회의원실에 전달했던 서명용지를 받기위해 다시 국회를 찾았다. 그러나 25명의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실은 보고가 안되었다. 다시 보내달라, 왜 필요하나, 할수없다 라는 등의 이유로 서명을 하지 않았다. 이번 주 중으로 독립군조직은 다시 국회의원회관을 방문하여 서명용지를 받을 계획이다. 행자위 여야간사인 민봉기, 원유철 의원실도 여전히 안전 상정에 대해 답을 주고 있지 않다. 한나라당 소속의 한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2월 1일과 2월 2일 양일에 거쳐 행자위 소속의 위원장, 여야 간사, 행정실전문위원들이 모여 2월 6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될 상임위 일정을 결정한다고 한다. 강제동원진상규명특별법이 행자위 안전으로 상정되기 위해서는 독립군 조직이 이 기간중에 일정을 결정하는 의원 들을 중심으로 독립군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박동 협대표는 26일 오후 권오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권오을의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하였다.

◎ 필막한 금주 회원단체 소식

- 1)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일본군성노예 할머니들에게 화이팅메시지 보내기' 캠페인을 1월 31일까지 전개한다. <http://www.k.comfortwomen.com>
- 2)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의 원고2명과 장안익공동대표는 1월 24일 오사카고등재판소에서 열린 신일본제철 항소심 제1차 재판에 참석하고, 다음날 신일본제철 동경본사와 교섭후 귀국했다.
- 3)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의 '아시아태평양전쟁한국인회생자보상청구사건' 항소심재판이 3월 5일 오후 3시 30분 도쿄고등재판소 813호법정으로 결정되었다. (일본의 전후책임을 확실히 하는 모임)

◎ 해외의 진상규명 뉴스

- 1) <중국인전쟁피해자의요구를지지하는모임>의 강제연행-강제노동제2차집단체상해배상청구사건이 2월 5일 11시 7호6법정에서 열린다.
- 2) 강제연행된 중국인 피해자모임인 <나가사키미쓰비시중국노동공수해지연의회>가 1월 18일 강제연행의 실태조사와 미불임금등의 배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미쓰비시머티리얼(동경본사)앞으로 보냈다. 이를 지원하는 일본의 시민단체 <나가사키중국인강제연행의 진상을조사하는모임>은 1998년부터 3회에 걸쳐서 중국인 845명이 강제연행된 나가사키지의 3개탄광에 대해 조사를 전개했다. 7월말부터 중국 대표 4명이 일본을 방문하여 1주일간 현지조사와 회사측과 보상에 대한 교섭에 들어갈 예정이다.(나가사키신문 2002.1.19)
- 3) 뉴욕에 본부를 둔 <Human Right Watch>는 2002년도 세계각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일본의 전후보상문제가 일본 정부에 의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고이즈미총리의 야스쿠니신 사참배가 비판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www.hrw.org/wr2k2/asia.html>
- 4) <재미일본군위안부-징용정의회복위원회>는 향후 단체명을 '정의회복위원회'로 개명하고 한국의 진상규명특별법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미국내 인사의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 5) <일본의전쟁책임생각하는히로시마의모임>의 후쿠도메씨는 특별법제정추진위의 '특별법추진속보'를 일어로 번역하여 발행, 일본전역에 배포하고 있다. noriaki.fk@nifty.com

◎ 조사위원회 활동

조사위원회는 정혜경실장을 중심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시급한 10대 과제 선정작업에 착수했다. 강제동원 진상규명을 위한 시급한 10대 과제는 최봉대 집행위원장이 초안을 작성하고 조사연구실의 정혜경실장이 수정하였다. 현재 10대과제에 대한 수정의견(추가항목, 항목 순서에 대한 다른의견, 항목의 추가사항 등)을 모으고 있다. 수정의견이 있으신 회원단체는 woosumi97@hanmail.net으로 연락주세요.

" 강제동원진상규명을 위한 10대 시급과제 "

1. 일본제철강제징용생존자와 유족들은 어디에 있다?
현재 일본제철의 후신인 신일본제철은 과거 강제노동문제를 화해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나 한국측에서 피해자 및 유족들의 진상이 규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단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여 화해가 미루어지고 있다.
2. 일본군 성노예의 피해자는 도대체 몇 명이며 현재 중국에 몇 명이나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가?
일본 역사왜곡의 첫 번째 대상으로 강제동원 아닌 자의에 의한 위안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그 숫자에 대해 8만명에서 2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거주하는 피해자들은 고국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우키시마호, 과연 어뢰사고인가 일본군에 의한 폭침인가?
1945년 8월 24일 마이즈루만 앞에서 침몰된 우키시마호는 일본의 주장대로 미군어뢰에 의한 사고인가 아니면 일본군의 고의 폭침행위인가, 최근 국회의 답변에서 보듯 우키시마호 사건은 한일청구권협정이 아닌 것이어서 일본의 귀책사유가 있을 시 정부가 책임을 묻겠다는데.
4. 사할린의 한인피해자들은 누구에 의해 사할린으로 끌려갔고 왜 해방이 된 후 반세가 넘도록 돌아오지 못했는가?
사할린의 이산가족 고통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왜 그들은 이중으로 버림받아야만 했는가.
5. 우천사에 있는 조선인 유골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일본에 돌아오지 못하는 유골만 해도 수를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마이즈루만 해저에도 나뒹굴고 있는 유골은 언제 반환을 받을 것이며 우천사에 있는 유골의 주인은 어디에 있는가.
6. 1948년 2월과 5월에 일본국으로 부터 반환 받은 유골과 위패는 현재 어디에 있는가?
현재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인 소송에서 쟁점이 되고 있듯 한국정부는 당시 유골이 왔는지 위 패가 왔는지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7. 원폭피해자의 고통은 어디까지인가?
최근 원폭 2세대들이 원폭후유증을 의심하는 원인 모를 병에 신음하고 있다. 원폭피해에 대한 명확 조사가 일원족 1세대를 보낼 수는 없다.
8. 일본법무성에 공탁된 약4조(7)원의 공탁금주인은 누구인가?
미국에서 진행중인 정신대 소송에서 피고가 일본국에서 일본기업으로 중심이 옮겨가고 있으나 피해자들을 태우고 간 선박회사, 철도회사, 아베제 조회사, 군표교환금융기관은 현재 어디에 있다.
9. 일본군 성노예(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통해 이득을 본 일본의 기업은 도대체 누구인가?
미국에서 진행중인 정신대 소송에서 피고가 일본국에서 일본기업으로 중심이 옮겨가고 있으나 피해자들을 태우고 간 선박회사, 철도회사, 아베제 조회사, 군표교환금융기관은 현재 어디에 있다.
10.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조선인 도대체 얼마이며 왜 전범귀신들에 붙들려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가?
태평양전쟁시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인·군속은 그 규모가 얼마나 되며 사망하고도 왜 일본귀신으로 여겨져야 하는가.

◎ 회비납부방편

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는 회원단체의 회비 및 후원금으로 운영 됩니다. 회원단체는 1년 6만원, 집행단체는 월 3만원의 회비를 아래의 계좌번호로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협 : 140-01-010570(예금주:강제동원)
 ·주택은행 : 432101-01-165586(예금주:강제동원)
 ·조흥은행 : 321-04-606606(예금주:강제동원)

한국일보

2001년 8월 1일 수요일 93년 日서 받은 징용자 명부에 야스쿠니신사 韓人합사자 포함 정부는 아예 몰랐다

이름·주소 등 상세기록 日에 현황 재요청 망신 유족들 "명단 공개해야"
 8월 1일 수요일. 93년 日서 받은 징용자 명부에 야스쿠니신사 韓人합사자 포함 정부는 아예 몰랐다. 2001년 8월 1일 수요일. 93년 日서 받은 징용자 명부에 야스쿠니신사 韓人합사자 포함 정부는 아예 몰랐다. 2001년 8월 1일 수요일. 93년 日서 받은 징용자 명부에 야스쿠니신사 韓人합사자 포함 정부는 아예 몰랐다.



태평양 전쟁 당시 강제 징용된 한국인 희생자 명부. 이를 위해 보여진 합사자(송준환·원내)는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돼 있음을 알렸다.

2001년 8월 4일 토요일 30판
한국일보서 8
 2차 대전의 패전국 일본을 국제사회에 복귀시킨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체결 50주년을 맞아 다시 역사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특히 6월 1일과 2일 연방지법은 일본의 전쟁배상 의무를 전전 부인하는 집단소송이 제기되면서 조약의 정당성·효력에 대한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발될 전망이다.

2001년 9월 8일 토요일 30판
한국일보서 8
 2차 대전의 패전국 일본을 국제사회에 복귀시킨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체결 50주년을 맞아 다시 역사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특히 6월 1일과 2일 연방지법은 일본의 전쟁배상 의무를 전전 부인하는 집단소송이 제기되면서 조약의 정당성·효력에 대한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발될 전망이다.

'日전쟁책임 봐주기' 논란 재연

전범배상종결 부인설로 "조약당성 의심" 대두 '개인배상' 막후거래 공개도
 1951년 9월 8일 미국의 주도로 열린 47개국이 일본과 맺은 이 조약은 서방 역사기록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 조약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포함하여 강제징용된 한국인 유족들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조약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포함하여 강제징용된 한국인 유족들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위안부 가해자' 국제적 인정 日정부 사과-배상 압박
 4일 여성국제법원판결이 일본군 위안부 관련 전쟁범죄 유죄 판결을 내림에 따라 그동안 위안부 피해배상을 외면해 온 일본정부가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에 더욱 거세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여성국제법원판결이 일본군 위안부 관련 전쟁범죄 유죄 판결을 내림에 따라 그동안 위안부 피해배상을 외면해 온 일본정부가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에 더욱 거세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은 사법적 강제성이 없는 민간법원에서 나왔지만 향후 위안부 피해배상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4일 여성국제법원판결이 일본군 위안부 관련 전쟁범죄 유죄 판결을 내림에 따라 그동안 위안부 피해배상을 외면해 온 일본정부가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에 더욱 거세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법재판소(ICC) 등 국제기구들은 이러한 일본정부의 태도에 대해 경신 시교와 입법 조치를 통해 개인배상을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 이번 판결은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도록 한 유고 국제인권법정 재판장이 수석판사로 맡는 등 세계적으로 제법한 국제법정들로 구성된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경중을 생겼으며 이들은 1년안에 관련 심리 끝에 판결을 내렸다.

